

농업의 여건 변화와 농업통계의 발전 방향

이 성 호 책임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10 / 1995.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

면

머 리 말

우리 농업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국민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엄청난 구조 변화를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의 농업통계 또한 이러한 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구와 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고, 조사대상작물도 꾸준히 증대시켜 왔다. 농업통계조직은 1947년을 기점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여 1974년에 전국적인 기구와 조직을 완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통계의 꾸준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방화시대의 개막에 따른 지역통계의 생산과 날로 다양화해 가는 농업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업통계의 대폭적인 재정비가 요청되고 있다.

즉, 우리 농업통계는 생산통계 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한 걸음 나아가 농업경영체 및 영농형태의 변화를 다양하게 수용하는 질적 정비가 요청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취약한 유통통계의 전면적인 개선, 지방화시대를 위한 지역통계의 구축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농업여건 변화에 따르는 농업통계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9개의 지정통계업무를 포함한 농업통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연구 인력이나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선 현행 농업통계의 제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으나 이 연구가 앞으로 농업통계 발전을 위한 보다 구체화되고 세부적인 개선방안이 모색되는 데 하나의 지침 및 참고자료를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 수행에 협력해 주신 농림수산부의 농수산통계정보담당관실 및 농수산통계출장소 당국에 감사드린다.

1995.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빈

면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범위	1
2. 주요 연구 내용	3

제 2 장 농업의 여건 변화와 농업통계의 발전과정

1. 농업의 여건 변화와 농업통계의 전개	5
2. 농업통계조사의 조사항목 및 결과의 공표	15
3. 농업통계의 전담기구와 조사체계	22

제 3 장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통계 수요의 변화

1. 농어촌발전계획추진대상사업과 농업통계 수요 전망	26
2. 농업 전문가 대상 농업통계 수요조사	32

제 4 장 현행 농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출현과 농업센서스의 개선 방향	39
2. 농업생산의 변화와 농업생산통계의 개선 방향	51
3. 농가경제통계의 정비와 생산비통계의 확대	56
4. 농업유통정보체계의 확립과 농업유통통계의 재편	59
5. 지역통계의 정비 및 통계조사업무의 개선	65
6. 농업통계 이용의 개선	71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농업정책여건의 변화와 농업통계 수요 변화의 전망	73
-------------------------------------	----

IV.

2.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부문별 농업통계 개선 방향	74
3. 농업센서스의 개선 방향	75
4. 농업생산통계의 정비 방향	78
5. 농가경제통계의 정비	80
6. 농업유통통계의 재편 방향	82
7. 지역통계의 정비 및 통계조사업무의 개선	85
8. 통계 이용의 개선	87
부 록 일본의 농업통계의 내용과 체계	89

표 목 차

제 1 장

표 1- 1 선행연구의 연구 대상과 연구 내용	3
---------------------------------	---

제 2 장

표 2- 1 농업정책의 전개과정과 농업통계의 발전	6
표 2- 2 농림수산부 주요 통계조사	8
표 2- 3 주요 통계조사의 작성기관 및 목적	10
표 2- 4 주요 통계조사의 조사방법(군 농수산통계출장소)	11
표 2- 5 행정통계의 종류와 내용	22

제 3 장

표 3- 1 농정의 주요 추진사업과 통계 수요의 변화	30
표 3- 2 농업 전문가 설문조사의 내용	33

제 4 장

표 4- 1 농민·농가의 관련개념과 정의의 실태	40
표 4- 2 영농 주체의 통계적 파악 실태와 관련 법률	41
표 4- 3 위탁영농회사의 연도별 설립 추이(1994. 7 현재)	42
표 4- 4 영농조합법인 연도별 설립 현황	42
표 4- 5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의 변화	45
표 4- 6 농가규모구조의 변화와 규모계층의 분류	47
표 4- 7 농산물판매금액규모별 분류	48
표 4- 8 판매규모별 분류	48

표 4- 9 농업투하노동일수별 분류	49
표 4-10 전·겸업별 분류 내용	49
표 4-11 농가유별 분류 내용	50
표 4-12 농업경영조직별 분류	50
표 4-13 농업노동력보유상태별 분류	51
표 4-14 작물별 생산면적 및 생산량 동향	52
표 4-15 화훼의 생산과 소비	53
표 4-16 농림업부가가치의 동향(불변가격)	57
표 4-17 축산물 소비 추세에 대한 전망	57
표 4-18 작물별 생산면적 및 생산량 동향	63
표 4-19 통계별 표본설계방법	66
표 4-20 농수산통계출장소 직급체계 비교	68
표 4-21 조사사례금 인상 조정안	69

제 5 장

표 5- 1 판매규모별 분류	76
표 5- 2 농산물판매액 규모	77

부 록

부표 1 일본 농업의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내용	91
----------------------------------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범위

1.1. 연구의 목적

- 현재 농림수산부의 주요통계조사업무는 농업총조사, 농업기본통계, 가축통계, 작물통계 등을 비롯한 9개의 지정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는 우리 나라 전체 지정통계 35개중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4개 통계를 제외한 31개 통계의 3분의 1에 근접하는 수치임.
- 농업통계는 농업내외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의 농가통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영농주체 및 생산단위를 수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며, 특히 1995년의 시·군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 따른 지방자치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통계의 정비 및 생산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음.

- 통계조사항목에 있어서도 그 동안의 농업구조 변화와 식품 소비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통계조사항목의 추가 및 조정의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음. 예컨대 축산물에 대한 생산 및 경영조사와 더불어 UR 이후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의 국면에서 현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설원예부문의 경영활동을 통계항목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증대하고 있음.
- 농산물 유통통계의 문제점으로서, 현재 우리의 농산물 유통관련통계는 98개 품목에 대한 산지 및 소비지가격을 조사하는 극히 초보적 수준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유통통계정보의 생산체제로 개편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초로 농업센서스, 생산통계, 농가경제통계, 농업유통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농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통계의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농업통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표본설계방법에 대한 연구와 조사항목 및 체계에 관한 연구의 두 가지 흐름으로 요약됨. 조사항목 및 체계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농업여건 변화와 관련시켜 농업통계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한 것은 「농업통계개선에 관한 연구」, 1980에 한정되며, 여타의 연구는 특정통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항목 및 체계를 다룸에 있어서도 제한된 주제만 논의하였음.
- 따라서 이 연구는 「농업통계개선에 관한 연구」, 1980의 연장선상에서 그 이후의 농업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전반적인 통계개선의 방향과 문제점을 구명하는 데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여건 변화에 따른 통계항목과 체계상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의 방향을 지적하는 데 그치며, 개선에 따른 표본설계와 조사방법의 설정은 이 연구의 범위의외로 취급하였음.
- 또한 이 연구는 농림수산부의 담당통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가운데서 수산통계는 이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함.

1.2. 연구 범위

표 1-1 선행연구의 연구 대상과 연구 내용

선 행 연 구	주요 연구 내용		대상통계
	표본설계	조사항목 및 체계	
농업통계개선에 관한 연구 1980. 12. 반성환외		●	농업통계전반
농가경제조사업무개선방안 1986. 6. 김병호, 이장호		●	농가경제조사
양곡 및 주요식품 소비량 조사업무개선에 관한 연구 1988. 8. 박세권외	●		양곡소비량조사
농업부문거시계정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1991. 7. 서 종혁, 황의식		●	농가경제조사
영농형태별 농가경제사연구 1991. 10. 김정호, 이장호외	●		농가경제조사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 1992. 9. 오치주, 이장호외	●		농가경제조사
농가의 정의에 관한 연구 1993. 12. 김정호		●	농업총조사
본 연 구		●	농업통계전반 수산통계제외

2. 주요 연구 내용

-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농업통계의 발전과정과 농업통계조사의 내용 및 연혁의 변화과정의 정리와 파악
- 향후 농업구조정책에 대응한 농업통계 수요 변화 전망과 농업 전문가 대상 농업통계 개선방안 청취조사

4

- 농업센서스, 농업생산통계, 농가경제통계, 농업유통통계의 개선방안
- 지역통계의 생산을 위한 농업통계기구의 정비와 개선방안
- 농업통계 이용의 개선방안

제 2 장

농업의 여건 변화와 농업통계의 발전과정

1. 농업의 여건 변화와 농업통계의 전개

1.1. 농정의 변화과정과 농업통계의 전개

- 농지개혁(1950년) 종료시의 한국 농업의 특징은 가족적 자작농, 수도작단일, 전업경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후 국민경제의 성장과 함께 농지가격 및 노임이 상승하고 1980년 이후 농가규모의 계층 분화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구조 변화를 경험하였음. 특히, 1980년대 이후 기계화영농단의 출현, 1990년에는 회사 및 법인경영의 출현 등에 의해 전통적 가족경영의 상대적 약화가 두드러지고 있음.
- 농업통계의 기구와 조직은 1947년을 기점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여 1974년에 전국적인 기구와 조직을 완성하였음. 따라서 우리 농업통계는 일본이 1947년 전쟁 직후 8,000명의 농업통계조사요원으로 전국적 통계조직을 완성한 데 비하여 매우 일천한 상황임.
- 농정의 목표와 농업통계의 발간년도를 보면 1970년대의 전반까

지는 식량자급과 증산에 정책의 주안점이 있었으며 농업통계도 이러한 식량작물, 주곡중심의 통계였음. 그 후 1970년 후반에 이르러 종래의 주곡과 식량작물 중심에서 경제 및 축산작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축산물 가격 및 수급에 관한 통계, 경제작물에 관한 통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음.

- 따라서 우리 농업통계의 정비는 1950년대의 주곡 중심의 농업통계의 정비와 1970년대 후반의 경제 및 축산작물 중심의 통계의 추가적 정비의 두번에 걸친 통계의 양적 확대기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통계부문별에 있어서는 주로 농업센서스 및 생산통계의 양적 정비에 편중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의 농업통계는 생산통계의 양적 정비에서 나아가 농업경제 및 영농형태의 변화를 다양하게 수용하는 질적 정비가 요청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취약한 유통통계의 질적·양적 정비, 지방화시대를 위한 지역통계의 정비가 시급한 현안으로 되고 있음.

표 2-1 농업정책의 전개과정과 농업통계의 발전

구 분	정책의 목표	농업통계기구의 전개	농업통계의 창간
해방후 경제개발계획전까지	1. 동란에 의한 피해 복구 2. 농지개혁의 성공적 수행 3. 식량증산	1947년 미군정에 의해 「농업통계보고령」 공포, 1948년 농림부 직제 개정에 의해 조사통계과 설치, 1955년 농정국 조사통계과로 개편, 농정과 식량작물생산량조사업무 이관, 1958년 농업센서스 업무 추가	○ 농림통계연보 (1952년) ○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1954년) ○ 농산물생산비조사결과보고 (1954년) ○ 식량작물통계 (1955년) ○ 농업센서스 (1960년)
제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2~66)	1. 농산물의 증산 2. 생산과정의 근대화	1964년 조사통계과 내 관리계, 조사계, 경제계 설치	○ 양곡소비량조사 결과(1963년)

표 2-1(계속)

구 분	정책의 목표	농업통계기구의 전개	농업통계의 창간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 (1967~71)	1. 식량의 자급자족 2. 농가소득의 증대 및 농공병진	1968년 축산과 가축통계업무의 이관, 1970년 양정과 양곡소비량조사 이관, 1971년 직제개정으로 조사통계과는 국수준으로 승격되어 작물통계담당관, 경제통계담당관을 둠	
제3차경제개발5개년계획 (1972~76)	1. 식량의 증산 2. 농촌근대화 (새마을운동)	1973년 조사통계관의 명칭을 농림통계관으로 개정, 1974년 농림통계관을 농업통계관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독립된 지방통계조사기구로서 도별로 9개의 농림통계사무소, 시군별로 농업통계출장소를 설치하여 전국통계조사기구를 완성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1977~81)	1.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2. 농어민소득증대 3.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1978년) ○ 작물통계 (1979년)
제5차경제개발5개년계획 (1982~86)	1. 농외소득 증진 2. 농산물수입개방 정책(개방농정) 3. 저미가정책으로 전환 4. 농촌공업 육성		
제6차경제개발5개년계획 (1987~91)	1. 상업적 영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1.2. 농림수산부 주요 통계조사의 내용

1.2.1. 농림수산부 담당통계

- 농림수산부 담당통계는 크게 농업생산통계, 유통경제통계, 수산통계로 나누어지며, 분류상으로서의 농업생산통계는 농업총조사를 비롯한 11개의 통계조사업무가 있으며, 유통경제통계는 농가경제통계를 비롯한 5개의 통계조사업무로 나누어 짐.

표 2-2 농림수산부 주요 통계조사

농업생산통계	유통경제통계	수 산 통 계
1. 농업총조사	1. 농가경제조사	1. 어업총조사
2. 농업기본통계조사	2. 농산물생산비조사	2. 어업기본통계조사
3. 가축통계조사	○ 논벼 생산비	3. 어업생산고조사
4. 경지면적조사	○ 맥류 생산비	4. 어가경제조사
5. 작물재배면적조사	○ 고추 생산비	
6. 쌀생산량조사	○ 마늘·양파 생산비	
7. 맥류생산량조사	3. 18개품목재배의향조사	
8. 두류생산량조사	4. 농산물유통정보조사	
9. 서류생산량조사	○ 농·수·축협, 농진	
10. 특용작물생산량조사	공에 의한 분산조사	
11. 과실생산량조사	○ 식량작물 10품목, 채소 21품목, 특용 작물 3품목, 화훼 8 품목, 과실 10품목, 축산물 12품목, 수 산물 33품목에 대 한 산지, 소비지경 략, 소비지도매, 소 비지가격조사	
	5. 양곡 및 주요 식품 소비 량, 재고량조사	

1.2.2. 주요 통계조사의 조사기관 및 작성 목적

- 1995년 현재 농림수산부의 통계담당업무는 농수산통계정보관산

- 하 통계정보기획관, 농산통계담당관, 유통경제통계담당관, 통계정보처리담당관이 설치되어 시행하고 있음.
- 농업통계의 작성목적은 <표 2-3>과 같이 대체로 정부의 정책시행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업총조사와 농업기본통계, 작물통계, 가축통계는 농수산통계정보관 산하 농산통계담당관이 시행하고 있고, 농산물생산비조사, 가축통계조사는 유통경제통계담당관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표 2-3 주요 통계조사의 작성기관 및 목적

농업통계	작성기관	작성목적
1. 농업총조사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정보관 농산통계담당관	1. 농업구조의 현황과 그 변동추세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 및 국가중합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기준을 설정 2. 국제간에 상호비교가능한 농업통계 자료를 모집하여 세계의 농업생산과 분배 등을 파악함으로써 식량문제의 해결과 영양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2. 농업기본통계조사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정보관 농산통계담당관	농업경영의 기본요소인 농경지, 농가 및 농가인구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3. 농산물생산비조사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정보관 유통경제통계담당관	농산물 적정가격 결정 및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4. 작물통계조사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정보관 농산통계담당관	농산물 파종면적과 생산량을 파악·분석하여 토지이용의 개선, 농산물의 수급 및 증산계획과 가격결정, 농업경영 개선 등 농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5. 양곡소비량조사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정보관 유통경제통계담당관	국민식량의 기초가 되는 양곡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양곡수급계획 및 국민식생활개선계획 등 양곡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
6. 가축통계조사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정보관 농산통계담당관 및 축산국 축산과	가축의 사육호수, 사육마리수 등의 기본자료를 모집하여 축산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1.2.3. 주요 통계조사의 조사방법

표 2-4 주요 통계조사의 조사방법(군 농수산통계출장소)

통계조사업무 구분		조사단위	조사회수	조사방법	
농 산 통 계	농업통계기본조사	조사구	연 1회	표본	
	경지면적조사	단위구	연 1회	표본, 전수	
	작물재배면적조사	단위구	연 6회	표본	
	식 량 작 물	미곡생산량조사	포 구	연 3회	표본
		맥류생산량조사	포 구	연 2회	표본
		잡곡생산량조사	포 구		표본
		두류생산량조사	포 구	연 1회	표본
		서류생산량조사	포 구	연 1회	표본
	과수생산량조사	필 지	연 1회	표본	
	채소생산량조사	포 구	연 1회	표본	
	특용작물생산량조사	포 구	연 1회	표본	
	가축통계조사	표본조사	조사구	연 4회	표본
전수조사		호	연 4회	전수	
유 통 통 계	농가경제조사	조사구	연 중	표본	
	농산물생산비조사	품 목	연 중	표본	
	양곡소비량조사	비 농 가	호	연 중	표본
		제조가공	업 체	연 1회	표본
	민간부문의양곡재고량조사	업 소	연 3회	표본	
	농수산물유통정보조사	품 목	매 일	표본	
식부의향 및 영농실태조사	품 목	연 중	표본		

- 농림수산부의 통계조사는 실무적으로는 전국 142개소 군단위에 위치하고 있는 군 통계출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기본 통계조사와 농가경제조사, 가축통계조사의 일부는 조사구단위로

조사되고 있으며, 경지면적 및 작물재배면적조사는 단위구로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농산통계에서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과 채소, 특용작물의 경우에는 포구단위에 의한 통계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과수생산량조사만 필지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유통통계에 있어서는 농산물생산비조사와 농산물유통정보조사, 식부의향 및 영농실태조사는 품목베이스에서 양곡소비량조사와 민간부문양곡재고량조사는 업체 및 업소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조사회수는 통계에 따라 연 1회에서 연 6회까지, 유통통계조사는 상당부분이 연중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조사방법은 주로 표본조사로서 시행함.

1.3. 농업통계조사의 연혁

1.3.1. 농업센서스

- 1960년 최초로 농업센서스 실시
- 1962. 6. 1 지정통계 제126-11-01로 지정
- 1970년 제2차 농업센서스 실시
- 1975년 간이농업센서스 실시
- 1980년 제3차 농업센서스 실시
- 1985년 간이농업센서스 실시
- 1990년 제4차 농업센서스 실시

1.3.2. 농업기본통계조사

- 1951. 10월부터 조사 실시
- 1968. 4. 18일 지정통계 제126-11-05 지정, 농림수산부령 제757호 「농업기본통계조사규칙」에 의거 실시

- 1974년부터는 종전의 행정계통을 통하여 전수조사하던 것을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하여 현재 매년 조사 실시하고 있음.

1.3.3. 농가경제조사

- 1953. 7. 1일부터 한국은행(조사부)과 합동으로 유의선정방법에 의해 전국 300호의 농가를 선정하여 조사 시작
- 1954. 7. 1일을 기하여 본조사를 한국은행과 분리하여 조사 실시
- 1961. 7. 1일을 기하여 표본 선정, 조사 내용과 방법을 개편·보완하여 조사 실시
- 1962. 12. 8일 지정통계 제1126-11-02로 지정
- 1973년 1975년 농업간이센서스 자료를 이용, 표본을 갱신확장하여 실시
- 1977년, 1975년 농업간이센서스자료를 기초로 표본을 재확장, 설계하여 조사
- 1987년, 1980년 농업센서스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 310개 조사지역, 3,100호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표본을 선정하여 매년 조사실시하고 있음

1.3.4. 농산물생산비조사

- 1962. 12. 8일 지정통계 제126-11-03으로 지정
- 1974년, 수도를 중심으로 한 대맥, 과맥, 소맥의 생산비조사에 콩, 옥수수, 고구마를 추가하여 조사
- 1975년, 김장 무, 배추를 추가하여 조사
- 1978년, 감자, 고추, 마늘을 추가하여 조사
- 1979년, 참깨, 유채, 팥, 땅콩을 추가하여 현재 매년 조사실시하고 있음.

1.3.5. 작물통계조사

- 정부 수립 이전부터 행정보고통계로서 작성해 왔음.
- 1967. 5. 29일 지정통계 제126-11-04호로 지정
- 1974년부터 논벼, 밭벼, 보리, 쌀보리, 밀, 호밀, 감자, 고구마, 콩, 팥

의 파종면적을 표본조사방법으로 대체하여 실시

- 1979년부터 상기 작물 이외 전작물은 행정계통을 통하여 현재 매년 조사 실시하고 있음.

1.3.6. 양곡소비량조사

- 1962년 농림부 양정국 주관하에 최초로 실시(농가 426가구, 비농가 294가구의 표본을 선정 조사)
- 1969년에 1966년도의 간이인구센서스결과자료를 이용하여 실시(전국 60개 표본지역에서 농가 1,140가구, 비농가 660가구의 표본을 층화 3단확률비례법에 의해 선정 조사)
- 1971년, 농림수산부 직제 개편으로 양정국에서 농업통계관실로 이관하여 실시
- 1973년, 농가와 비농가의 표본을 각각 독립시켜 실시(농가의 조사는 농가경제조사 표본가구 2,500가구에서 병행조사, 비농가의 조사는 1970년도의 인구센서스 결과자료를 이용하여, 층화 3단계 확률비례추출법에 의해 60개 조사구에서 1,200 표본가구 선정 조사)
- 1977. 1. 19일, 일반통계 제126-21-26으로 승인, 동년에 농가경제조사의 표본을 재설계함에 따라 농가의 대상가구 수를 2,5618가구에서 3,375가구로 변경하여 실시
- 1978년, 비농가를 1,200가구에서 1,812가구로 확대하여 실시
- 1982년부터 198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자료를 이용하여 비농가표본을 재설계하고, 1,760가구에 대하여 현재 매년 조사 실시하고 있음.
- 1984년에 가구 이외부문(음식점, 병원, 사회복지시설) 소비량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비농가 표본수를 1,760호에서 624호로 축소하여 현재 매년 조사 실시하고 있음.

1.3.7. 가축통계조사

- 1948년부터 농림수산부 축산국에서 행정보고에 의해 파악

- 1968년부터 농림수산통계관실에서 조사 실시
- 1974년부터 전수조사 및 표본조사방법에 의해 조사(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하며, 축산국(축산과)은 행정보고통계로 기타 가축(말, 산양, 면양, 토끼 등)을 조사 실시
- 1976. 12. 17일, 지정통계 제126-11-06으로 지정, 현재 분기별로 조사 실시하고 있음.

2. 농업통계조사의 조사항목 및 결과의 공표

2.1. 농업센서스

2.1.1. 조사항목

(1) 농업사업체조사(농가, 준농가)

- ① 농가(위치, 영농주체, 전·겸업, 영농후계자, 영농형태)
- ② 농가인구(연령별, 성별, 학력 및 영농형태별)
- ③ 농경지{경지(전, 답, 수원지), 소유형태, 경자유용형태, 관개시설, 목초지}
- ④ 작물{일반작물(수확작물), 시설작물(시설면적, 재배면적), 과수(재배면적, 주수)}
- ⑤ 가축 및 가금(사육두수, 참사 생산량)
- ⑥ 농기구(기종별, 보유대수)
- ⑦ 문화시설(문화용품 소유 상황)

(2) 지역조사

- ① 지역 개황(가구수, 인구, 생산공동시설까지 거리, 관청 소재지까지의 거리, 임금, 문화·복지시설)
- ② 농업생산시설(농산물유통기구, 농업용수, 농기계, 영농형태, 영어형태, 농축산물생산단지)

- ③ 경제여건(지대별, 도로 이용)

2.1.2. 결과의 공표

- 일부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수집계하여 속보로서 발표하고, 종합 결과보고서는 전자계산에 의거 자료처리한 후 농업총조사를 발간하여 공표함.

2.2. 농업기본통계조사

2.2.1. 조사항목

(1) 농경지(실측조사)

- ① 경지면적: 답(1모작, 2모작), 전(수원지 포함)
- ② 경지규모별면적(면접조사)

(2) 농 가

- ① 전·겸업별 농가(면접조사)
- ② 업태별 농가(면접조사): 답작, 전작(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과수, 가축, 양잠, 임금농업노동, 기타

(3) 농가인구

- ① 성별 농가인구(면접조사)
- ② 연령별 농가인구(면접조사)
- ③ 취업별 농가인구(면접조사)
- ④ 학력별 농가인구(면접조사)

2.2.2. 결과의 공표

- 농림수산통계연보 및 유인물을 발간, 공표함.

2.3. 농가경제조사

2.3.1. 조사항목

(1) 표본농가의 개황

- ① 표본농가의 상재가구원 또는 동거인에 대한 경영주와의 관계, 연령, 직업, 교육상태, 노동능력 및 경지 개황과 취업관계를 조사(여기서 가구원 또는 동거인이라 함은 3개월 이상 항시 동거하는 자로서 가족이라도 3개월 이상 출타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함)
- ② 노동능력은 당해지방의 실 일꾼을 표준으로 가구원의 성별·연령 농업노동의 숙련도를 참고로 실 노동능력을 평가하였으며, 경지 개황은 자작 경지와 차용 경지에 한하여 조사

(2) 표본농가의 수입과 지출(농가일절의 수입과 지출은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용한 단식부기의 부기법에 의함)

- ① 수입은 농업수입, 겸업수입 및 사업외 수입인 급료, 임차료 및 이자수입과 사례금, 송금보조, 피증보조 등으로 구성된 이전수입 및 재산적 수입으로 구분조사(① 사업수입, ② 사업외수입, ③ 이전수입, ④ 재산수입)
- ② 지출은 농업지출, 겸업지출, 사업외 지출, 조세공과와 가계비, 분가지출 및 재산적 지출로 구분 조사(① 사업지출, ② 사업외 지출, ③ 조세공과금, ④ 분가지출, ⑤ 가계비, ⑥ 재산적 지출)

(3) 노동시간

- ① 가구원의 노동시간 및 노동일수, 노동시간은 노동종류 및 작물별로 조사
- ② 축력시간과 사용일수, 가구원의 노동시간은 소득적 노동에 대하여만 조사하며, 가계소비 노동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음.

(4) 표본농가의 재산(표본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 농가재산은 연도초 및 연도말 2회에 걸친 정태조사, 농가재산은 원칙적으로

조달원가 또는 재조달원가에 의해 평가하고 내용년수는 농림수산부 통계관실에서 잠정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함)

*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

- 가구, 가재, 의약품 등의 가재용 자산
- 농업 이외에 전용되는 건물, 기계, 선박 등의 농외고정자산과 겸업의 원료와 상업자본이 되는 재화 등 농외 유동자산
- 소식물 및 소농기구
- 자기의 경영내부에서 생산되어 다시 농업생산 내부에 투하되는 사료, 추비, 녹비, 종묘 등의 중간생산물과 농업생산물의 부산물인 짚, 보릿짚, 계분 및 가계의 폐잔물인 초목회, 인분뇨 등의 부산물

* 농가자산의 평가

- 연도초 현재가=(연도초 재조달가-당해년도의 감가상각비)*경과년수
- 연도말 평가액=연도초 현재가+연내 증가액(처분차 이익을 가산함)-연내 감소액(처분차 손실은 감함)
- 감가상각비=(연도초 재조달시가-잔존가격)/내용년수

2.3.2. 결과의 공표

- 연간 집계결과 및 월별 집계결과를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서에 수록, 공표함.

2.4. 농산물생산비조사

2.4.1. 조사항목

- 2.4.1.1. 생산비(농가에서 조사작물의 일정단위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비한 경제적 희생을 말하며, 그 경제적 희생은 반드시 화폐 지출의 형태로 포착됨)

(1) 기초생산비와 생산비

① 기초생산비는 본래 의미의 생산비임(기초생산비=종묘비+농약비+비료비+기타 제재료비+수리비+농구비+영농시설비+축력비+노력비)

② 생산비=기초생산비+토지용역비+자본용역비=경영비+내급비

(2) 경영비(생산비를 농가의 내부 경제적 관계에서 분류하였을 때 순비와 자급비를 합산한 비용, 즉 생산비에서 농가에 소득으로 된 비용 부분인 내급비를 공제한 경영학상의 생산비를 말함(경영비=순비+자급비=생산비-내급비))

(3) 부산물생산비 공제 생산비와 부산물생산비 불공제 생산비(부산물공제 생산비는 부산물생산비를 공제한 생산비이며, 부산물생산비 불공제 생산비는 부산물생산비를 공제하지 않은 생산비를 말함)

2.4.2. 결과의 공표

○ 농산물생산비조사결과보고서 및 농림수산통계연보에 게재, 공표함.

2.5. 작물통계조사

2.5.1. 조사항목

(1) 재배면적조사: 100품목 이외의 모든 작물

(2) 생산량조사(작물조사, 예상량조사, 실수확량조사): 논벼, 밭벼, 걸보리, 쌀보리, 밀, 호밀, 맥주보리, 마늘, 양파, 고추, 김장 무, 김장 배추, 콩, 팥, 유채, 땅콩, 참깨, 감자, 고구마 사과, 배(21개 품목)

(3) 행정조사작물

① 채소: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 토마토, 봄 배추, 시금치, 상추, 양배추, 봄 무, 파, 당근, 생강

② 특용작물: 면화, 들깨

③ 과수: 복숭아, 포도, 밀감, 감, 기타 과수

2.5.2. 결과의 공표

- 작물통계와 농림수산통계에 수록, 공표함.

2.6. 양곡소비량조사

2.6.1. 조사항목

- (1) 조사양곡: 미곡, 맥류, 잡곡, 서류로 구분되어 취식하는 주식물과 장류, 제병, 제과 기타 등을 제조한 양곡
- (2) 조사사항
 - ① 양곡 소비량(곡류별, 용도별)
 - ② 곡류 보유량(곡류별)
 - ③ 양곡 식량용외 소비량(사료, 판매용)
 - ④ 가구원
 - ⑤ 외식회수

2.6.2. 결과의 공표

- 매년 양곡소비량조사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공표함.

2.7. 가축통계조사

2.7.1. 조사항목

- (1) 가축(사육규모별 가구수 및 마리수 연령별, 성별, 조별 마리수)
 - ① 한우(육우 포함)
 - ② 젖소
 - ③ 돼지
 - ④ 마필(말, 당나귀, 노새)
 - ⑤ 산양

- ⑥ 면양
- ⑦ 사슴
- ⑧ 토끼(모피용, 육용)
- ⑨ 개
- ⑩ 여우
- ⑪ 멧크
- ⑫ 친치라

(2) 가금(사육규모별 가구수 및 마리수)

- ① 닭
- ② 오리
- ③ 칠면조
- ④ 거위
- ⑤ 메추리

(3) 꿀벌(규모별 가구수 및 군수 종별, 사육형태별 가구수 및 군수)

(4) 양조류(규모별 가구수 및 마리수, 종별, 사육형태별 마리수)

2.7.2. 결과의 공표

- 농림수산통계 및 유인물을 발간, 공표함.

2.8. 기타 통계

2.8.1. 일상농정추진을 위한 통계조사

- 일상농정추진을 위한 통계조사에는 재배의향조사를 비롯하여 농산물가격정보, 과수실태조사, 영농실태조사가 행하여지고 있음.

2.8.2. 행정통계

- (1) 기타 농작물생산량조사(29종): 조, 수수, 옥수수, 메밀, 녹두, 수박, 토마토, 호박 등

- (2) 영농관련통계(4종): 농기구보유상황, 영농규모 등
- (3) 기타(5종): 배합사료 생산실적보고, 도축검사보고 등

표 2-5 행정통계의 종류와 내용

구 분	항 목	조사기간	주요조사대상 및 항목
재배의향조사 (18종)	○ 여름작물 -벼, 콩 등 9종	작물별 연 2, 3회	○ 농가경제조사지구 표본농가 3,140호 를 대상으로 조사 ○ 고추, 마늘 등 일 부 작물은 주산지 농가 병행조사
	○ 겨울작물 -보리, 마늘 등 5종	작물별 연 2, 3회	
	○ 김장채소 및 고냉지채 소 4종	작물별 연 2, 3회	
농수산물가격 정보(98품목)	○ 산지가격 ○ 소비지가격	5일, 10일, 30일 간격 매일	○ 전국 주산지 농, 축, 수산물가격조사 ○ 도매, 소매, 경매가 격조사
과수실태조사		5년 주기	○ 과수면적 및 과종 별 주수
영농실태조사	○ 수도병충해방제	연 9회	○ 6월10일부터9월20 일까지(10일간격) ○ 경운, 이앙, 수확 등 ○ 농어민여론 및 동 향 파악
	○ 농업기계화율조사 등 ○ 시책추진실태조사	연 1회 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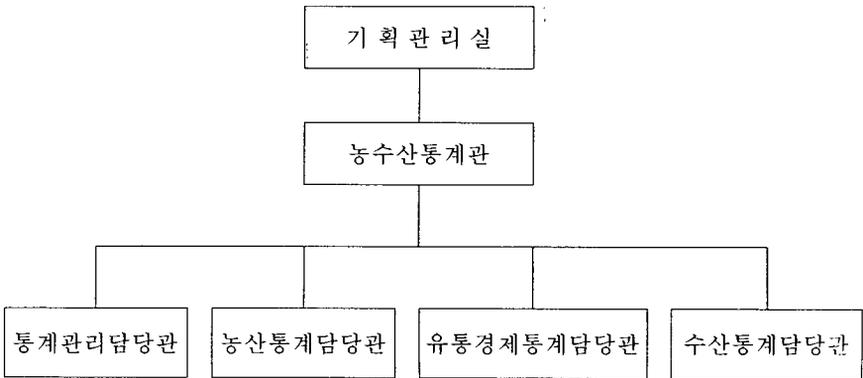
3. 농업통계의 전담기구와 조사체계

3.1. 농업통계 전담기구의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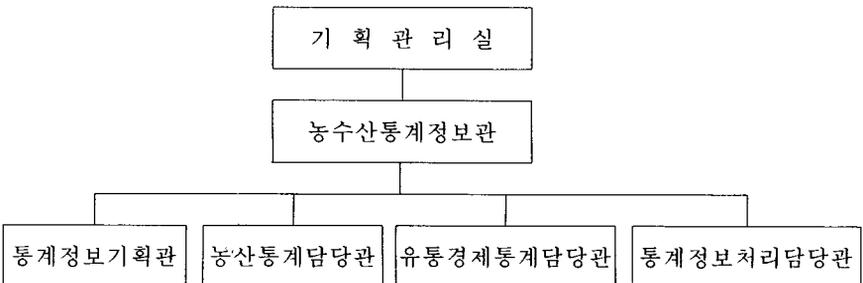
- 1995년 1월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농림수산부 농업통계 전담 기구가 개편되었으며, 관장업무도 수정되었음.
- 1994년까지 농림수산부의 통계조사업무가 농림통계관실 산하에

통계관리담당관실, 농산통계담당관실, 유통경제통계담당관실, 수산통계담당관실의 4개 과에서 관장하였으나 1995년부터 농림통계관실이 농수산통계정보관으로 개편되고, 산하 기구도 통계정보기획관, 농산통계담당관, 유통경제통계담당관, 통계정보처리담당관으로 각각 개편되었음. 그리고 지방에 9개의 도 사무소, 시군에 142개의 시군 출장소를 두고 있음.

- 농림수산부 농업통계 전담기구 개편의 내용을 보면 농업통계 전담기구가 기존의 기획관리실 산하에 있으나 개편 이전의 통계관리담당의 통계정보업무와 전산업무를 분리하여 통계정보기획과 통계정보처리업무로 분리, 개편하였음.
- 1995년 1월 이전의 농림수산부 농업통계 전담기구



- 1995년 1월 이후의 농림수산부 농업통계 전담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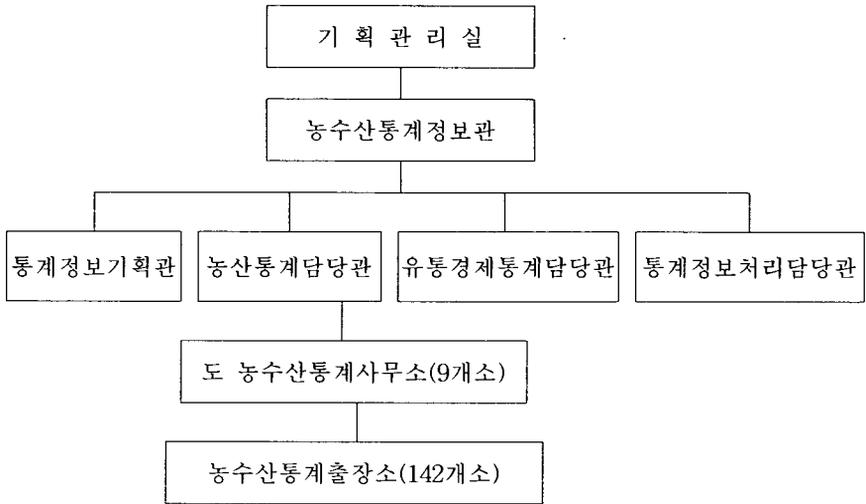
3.2. 농림수산부 농업통계 전담기구의 개편의 배경

- UR 이후 WTO체제에 대응하고 1970년대 이래의 농산물 증산정책에서 수급정책으로 전환기조가 정착되어 이에 상응하는 농업통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청되어 왔음.
- WTO체제 이후의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는 농산물가격불안정, 농산물수급불안정의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생산·출하와 가격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급 전망을 조기에 분석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주산지과 농가, 유통기구를 연결하는 전산망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통계에 있어서도 생산 및 유통전산망에 의한 통계 및 정보처리기능이 강조되는 업무분장체제로의 개편이 불가피하였음.

3.3. 농업통계 사무담당인원 및 예산

- 농업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은 농림수산부에 농수산통계정보관 산하 4개의 통계총괄 담당부서, 각 도별로 9개소의 도농수산통계사무소, 전국 군 단위에는 142개소의 군 농수산통계출장소에 2,110명의 통계조사요원이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정원은 2,110명의 구성을 보면 본부에 76명, 지방에 2,034명을 두고 있으며, 인력 배치면에서는 주로 현지 조사업무에 치중되어 있고, 직급면에서는 도 농수산통계사무소 소장이 5급, 2,025명이 6급 이하의 하위직으로 전 인원의 96%에 상당하는 인력이 현지 조사업무에 임하고 있음. 최근의 조사인력의 경향은 이직·전직의 비율이 높고, 노령화·여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1994년 현재 농수산통계 예산은 429억원, 이 중 인건비와 기관운영비가 91%를 점하고 있으며, 통계조사비 37억원중 전산실 운

- 영비 28억원을 공제하면 순수조사비는 9억원으로 통계조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예산 편성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 농림수산부 농업통계기구 및 조직



제 3 장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통계 수요의 변화

1. 농어촌발전계획추진대상사업과 농업통계 수요 전망

- 현재 우리 농업의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시급히 개선하거나 조정되어야 할 부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향후 농정의 중점 시책과 농업통계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 표의 내용임.
- 우리 농정의 미래를 제시한 농어촌발전계획의 기본 내용을 보면 ① 정예농수산인력 육성,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 ③ 농업경영 합리화, ④ 기술 개발 및 보급, ⑤ 소득원 다양화 및 농촌생활 개선, ⑥ 유통·가공 및 수출 지원을 주요 시책목표로 하고 있음.

1.1. 전업농육성정책과 과수, 화훼, 특작에 관한 통계정비의 필요성

- 정예농수산인력 육성의 구체적 시책을 보면 농어민후계자의 육

- 성을 포함하여 전업농어의 육성, 농업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향후 전업농어의 육성을 작목별로 본다면 식량작목은 쌀에 한정하며 과수, 화훼, 특작 등 경제작물의 전업농 육성이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농업통계에 있어서도 과수, 화훼 등의 경제작물의 생산 및 생산비조사가 강화되어 이 부문의 정책 수립과 경영 참여농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원예, 특작부문의 통계는 채소예 있어서는 과채류·엽채류·근채류 총 17개 작목의 노지·시설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조사되고 있으며 사과·배 등 9개의 과실 및 참깨·들깨를 포함한 6개의 특용작물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조사되고 있음.
- 그러나 작목별 재배농가수, 경지규모별 농가수, 노동력 보유 현황, 작목별 생산비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농산물의 경영정보의 파악과 수급계획의 수립이 제약되는 현실에 있음.

1.2. 경영규모확대정책과 농지규모분류의 확대

- 농업경영합리화 사업으로서는, ① 경영규모 확대, ② 농업기계화, ③ 품목별 시설현대화가 열거되고 있으며, 가장 우선 시책으로 되어 있는 경영규모 확대는, ① 농지매매사업, ② 농지장기임대차사업, ③ 농지의 교환·분합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우리 농업센서스의 경지규모별 농가의 분류는 0.1ha에서 3.0ha 이상까지를 12구간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분류상한규모인 3.0ha 이상 농가의 비율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대농층의 증가는 우리 농업구조 변화의 특징적 현상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농업경영규모 확대는 정책목표로서뿐만 아니라 이미 농가규모계층의 양극분화로서 현재화되고 있음. 또한 경영규모면에서 이미 3ha 이상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농업센서스를

비롯한 여타의 통계의 농가규모를 3ha 이상의 급간으로 보다 확대·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3.0ha 이상의 급간을 세분화하여 대규모경영에 대한 통계, 경영정보를 보다 세분화하고 정책 수립담당자, 학계, 대규모경영 지향의 농업경영자에 실질적인 통계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1.3. 지역통계확보에 의한 농림수산물정보화와 농지전산화사업전개의 필요성

- 기술 개발 및 보급시책에 수반하는 농림수산물정보화사업과 농지전산화사업은 전국의 지역단위의 통계와 정보가 집계적으로 처리될 때 의의를 가지는 것이므로 농림수산물정보화사업과 농지전산화사업은 지역통계정보체계의 정비와 동시에 추진할 성격의 것이며, 향후의 지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지역통계의 생산이 시급한 실정임.
- 통계별 표본설계방법에서 보다시피 농업센서스를 제외하고는 현재 주요 통계조사의 표본설계방법이 전부 전국단위의 표본설계에 의한 통계적 추정치를 공표하고 있으므로 지역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전체 표본설계를 수정하여 군단위 표본설계가 가능하도록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통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단위 농수산물통계출장소의 업무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재 동일한 농림수산물 산하기관으로서 타기관과 비교할 때 직급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대외업무의 추진에 애로사항이 크고, 이로 인한 승진기회가 적음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실정이며, 통계 관련 공무원들의 전직·이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직급체계상의 문제는 통계인력의 노령화·여성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현지조사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비표본오차의 발생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통계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큰 장애

-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외에도 지역통계 확보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농가 조사 사례금의 상향 조정, 통계조사 시설·장비의 확충, 전문성에 적합한 수당의 신설 등이 요청되고 있음.

표 3-1 농정의 주요 추진사업과 통계 수요의 변화

구 분	주요 추진사업	농업통계의 수요 전망
정예농수산 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민후계자 육성 ○ 전업농어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쌀 ② 과수 ③ 화훼 ④ 특작 ⑤ 어업 ⑥ 축산 ○ 농수산고, 농업전문대의 육성, 농과대학 시설·장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전업농어가의 육성을 작목별로 본다면 식량작목은 쌀에 한정하며 과수, 화훼, 특작 등 경제작물의 전업농 육성이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농업통계에 있어서도 과수, 화훼 등의 경제작물의 생산 및 생산비조사가 강화되어 이 부문의 정책 수립과 경영 참여농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농업생산 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개발 ○ 지표수, 지하수 개발, 수리시설, 배수 개선 ○ 경지정리 및 대구확경지 재정리사업, 기반 정비 ○ 간척사업 	
농업경영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지매매사업 ② 농지장기임대차사업 ③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 농업기계화 ○ 품목별 시설현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예작물생산, 유통지원 ② 축산 경쟁력 제고 지원 ③ 경종농업 지원 ④ 잠업·특용작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규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농지매매사업, 임대차사업, 교환·분합사업을 위해서는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지역단위의 보다 상세한 통계가 요구되고 있음 ○ 농업경영규모 확대는 정책목표로서뿐만 아니라 이미 농가규모계층의 양극분화로서 현재화되고 있음. 또한 경영규모면에서 이미 3ha 이상층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농업센서스를 비롯한 여타의 통계의 농가규모 3ha 이상의 금간을 보다 확대,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과수, 화훼에 대하여 원예작물의 생산, 생산비통계가 필요함

표 3-1(계속)

구 분	주요 추진사업	농업통계의 수요 전망
기술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애로기술 개발 ○ 첨단기술개발사업 ○ 농림수산물정보화사업 ○ 농지전산화사업 ○ 제반 축산기술 및 품종 개량사업 ○ 기술보급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정보화사업과 농지전산화사업은 지역통계정보체계의 정비와 동시에 추진할 성격의 것이며, 향후의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지역통계의 생산이 시급한 실정임
유통·가공 및 수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구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 ②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③ 청과물종합처리장 건설 ④ 축산관측사업 ⑤ 기타 농축산물의 상적·물적 유통시설의 확충 ○ 가공·자원 ○ 수입관리 및 수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의 농업통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유통관련통계임. 유통구조개선이라고 할지라도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전무한 실정임 ○ 농업유통구조 상적·물적 유통의 유통 주체별 유통량, 유통가격, 유통비용 등의 통계화가 필요함 ○ 신선도가 중요시되는 청과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과물의 유통통계의 생산이 시급함
소득원 다양화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 관광농업의 육성 ○ 농공단지 조성 ○ 기타·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1.4. 유통 관련 통계의 전면적인 재정비

- 현재 우리의 농업통계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유통 관련 통계이며,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정비와 함께 유통 주체별 유통량, 유통가격, 유통비용 등의 통계적 파악이 필요함.

- 산지유통의 개혁, 공영도매시장의 개혁, 소비자유통경로의 다원화를 통하여 개방체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유통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산지별 유통 및 관측정보의 파악, 산지에서의 선별, 규격포장, 저장, 가공 등에 대한 유통정보화가 시급함. 그외에도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가격, 출하량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화·정보화 등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됨.
- 농림수산부의 각 전담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저장, 분석, 가공, 분산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수산통계관실을 농수산통계정보국으로 개편하고, 농업관측협의회를 농업관측위원회로 개편하여 농업관측기능의 수행과 유통업무에 관련한 각 기관의 업무조정·평가 및 개선방안 등을 심의, 정부의 가격안정정책에 대한 조언을 행하도록 하는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음.
- 또한 우리 농업에서 경제작물로서의 청과물의 비중은 매년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과물유통과 가격안정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으므로 청과물의 집·출하기구와 도매시장을 통계파악의 거점으로 하여 산지별 입·출하, 시기별 물동량과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통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2. 농업 전문가 대상 농업통계 수요조사

-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통계 개선 방향의 수립을 위하여 농업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통계는 현 농림수산부가 관장하는 통계로서 농업센서스, 농업생산통계, 농가경제통계, 농업유통통계, 지역통계, 통계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음.

2.1.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의 내용

표 3-2 농업 전문가 설문조사의 내용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의 내용	응답자 수
농업센서스 (1) 농업사업체조사의 개선 방향 (2) 작물 및 가축조사에서 추가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품목 (3) 농업센서스의 농가규모 분류 (4) 농업센서스의 조사 주기	응답자 7인 응답자 7인 응답자 10인 응답자 6인
농업생산통계 (1) 농업생산통계에서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할 품목	응답자 4인
농가경제통계 (1) 농가경제통계에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항목	응답자 8인
농업유통통계 (1) 새로운 농업유통통계의 체계에 대한 제언	응답자 9인
지역통계 (1) 지역통계의 확보방안	응답자 10인
통계의 이용 (1) 통계 이용의 개선 방향 (2) 기 타	응답자 4인 응답자 4인

2.2.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결과

2.2.1. 농업센서스

(1) 농업사업체조사의 개선 방향

- 경영체의 다양화가 농업센서스에 반영되어야 함.
- 경영체의 조사가 위탁영농회사, 농사법인, 기타로 분류되어 조사되어야 함.
- 준농가를 세분류하여 다양한 영농체를 수용하여야 함.
- 농가, 준농가분류라는 기존의 체계는 그대로 두고, 그 이외의 영농체에 대한 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작물 및 가축조사에서 추가되거나 조정되어야 할 품목

- 시설작물의 식부면적이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노지재배로 분류 파악되어야 함.
- 참외류의 과채류, 고추, 화훼의 세분류에 의한 노지시설 구분 조사
- 시설감귤의 식부면적이 파악되어야 함.
- 과수의 수령별로 조사되어야 함. 고정자산의 성격을 갖는 품목의 조사가 중요함.

(3) 농업센서스의 농가규모 분류

- 기존 1ha 이하의 규모는 1ha로 통일하고, 3ha 이상규모의 분류·집계가 필요함.
- 현재의 규모 분류는 한국 농업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데 불충분하며, 규모 분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예: 3~5ha, 5~10ha, 10ha 이상).
- 규모의 분류기준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함(예: 3~5ha, 5~10ha, 10~50ha, 50~100ha).
- 상한규모를 20ha로 하고, 그 범위내에서의 세분류
- 상한규모를 50ha로 하고 분류는 3~5ha, 5~10ha, 10~15ha, 15~20ha, 20~30ha, 30~50ha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모 분류에 더하여 축산, 시설, 화훼 등으로 품목별 규모 분류가 중요함.
- 농가인구의 학력별조사를 보다 국졸까지 세분화하고 취업자의 연령별 구분을 더욱 세분화하여야 함.

(4) 농업센서스의 조사 주기

- 5년 주기의 간이센서스조사가 필요하며, 농가호수 및 경치에 대해서는 매년의 통신조사의 실시도 고려해 볼 시점임.
- 5년 주기의 간이센서스조사가 필요함.

2.2.2. 농업생산통계

(1) 농업생산통계에서 추가 또는 삭제되어야 할 품목

- 논벼의 경우 품종별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조사될 필요가 있음.
- 화훼류, 엽채류의 세분류조사가 필요하며, 밭벼는 생산량이 매우 적으므로 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밭벼, 면화, 특수가축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에 화훼, 벼싹류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화훼류, 특히 분화류의 세분류통계가 필요함.

2.2.3. 농가경제통계

(1) 농가경제통계에서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항목

- 농가수입항목을 도시가계의 수입항목과 일치시켜 비교 가능한 통계가 되어야 함(예: 이전소득).
- 생산비조사의 품목을 화훼, 과수, 채소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여야 함.
- 채소, 원예작물의 생산비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농지의 이동과 임대차를 파악하는 별도의 농지전문통계가 필요함.
- 농업부문 자본스톡, 투자, 감가상각 등 일련의 농업자본계정(농기계, 농경지, 관배수, 용수개발, 대자본스톡)의 통계적 파악이 필요
- 농지의 이동이 경영주체별로 파악되는 농지전문통계가 필요함.
- 농지의 이동이 농민·비농민으로 세분되어 표시되는 농지전문통계가 필요함.

2.2.4. 농업유통통계

(1) 새로운 농업유통통계의 체계에 대한 제언

- 동일품목이라도 품종별 유통경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품목별·지역별 가격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수입 농산물에 대한 가격 및 유통경로조사가 필요함.

- 청과물의 집·출하를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통계화하여야 함.
- 청과물도매시장의 물동량의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함.
- 산지 및 단지별 조사가 필요함.
- 유통경비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 산지에 대한 통계화가 필요하며, 산지조직의 코드화로서 통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함.

2.2.5. 지역통계

(1) 지역통계의 확보방안

- 농업경영체의 지역별 분포가 통계화되어야 함.
- 농업생산통계의 통계수치는 최소한 군단위 수치가 발표되어야 함.
- 농가경제통계의 지역단위 발표
- 지역별 논, 밭 임대차료조사가 필요
- 생산비조사의 지역통계가 확보되어야 함.
- 지역단위 농업통계가 정비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군 농촌지도소, 시군 농수산통계출장소, 읍면사무소(농산과)의 유기적 조사공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 인원의 활용으로 현재의 통계인력 부족을 보완해 나가야 함.
- 시군 농촌지도소가 지역농업센타로 전환될 경우, 이를 시군 농수산통계출장소와 병행하는 지역통계 및 정보관리업무의 수행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도단위 농업연감이 발표되어야 함.

2.2.6. 통계의 이용

(1) 통계이용의 개선 방향

- 개인비밀을 보장하면서 통계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의 모색이 절대필요함(예: 개인코드는 비밀로 하고 조사개표만을 공개).
- 통계용역회사와의 협력에 의해 일반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농

업통계에 도입하여 통계의 완전이용자유화를 실현해야 함.

- 최소한 연구자와 학계에 한하여는 통계표본자료의 개방이 요청됨.
- 통계개표(원자료)는 개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연구원, 대학교 등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절대개방하여야 함.

(2) 기 타

- 모든 농업통계의 전산화와 이에 따른 디스켓 판매, CD롬화, 천리안, 하이텔의 의한 PC통신화시켜야 함.
-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에 즈음하여 PC로서 직접 통계자료를 정리하는 PC통신화가 시행되어야 함.
- 농업통계디스켓을 유료로 판매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3.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결과의 요약

- 농업통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음.

2.3.1. 농업센서스

- (1) 농업사업체조사의 개편
- (2) 조사작목 및 조사항목의 추가
- (3) 농가규모 분류의 개편
- (4) 조사주기의 단축

2.3.2. 농업생산통계

- (1) 조사작목 및 조사항목의 개편
- (2) 시설원예, 화훼 관련 통계의 강화

2.3.3. 농가경제통계

- (1) 조사작목 및 항목의 개편

- (2) 농지전용통계의 확보

2.3.4. 농업유통통계

- (1) 농업유통통계 조사체계의 전면적 개편

2.3.5. 지역통계

- (1) 지역통계 확보체계의 구축
- (2) 지역 기초통계의 확보
- (3) 시군 농수산통계출장소 위상의 재정립

2.3.6. 통계의 이용

- (1) 지역통계자료 이용의 개방
- (2) 지역통계자료의 전산화, PC통신화

제 4 장

현행 농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출현과 농업센서스의 개선 방향

1.1.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통계적 수용

- 우리 농업은 1980년대 이후 농업기계화의 급속한 진전을 바탕으로 기계화영농단을 비롯하여 위탁영농회사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서비스업체가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영농조합법인 등 다양한 영농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
- 우리 나라 농업통계는 그 시발부터 세대단위 농가를 농업생산의 단위로 규정하고, 그 총량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가통계를 작성하여 왔음. 이러한 가족농의 전제는 농업노동력의 유출이나 상업농화의 진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퇴색되고 있음.

표 4-1 농민·농가의 관련개념과 정의의 실태

통계적 개념	정책적 개념
<p>○ 농업생산을 총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주체(사업체)를 개인농가와 준농가로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농가: ① 경지(논, 밭, 과수원)10a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② 시설작물 3a 이상, 과수나 묘목 7a 이상 재배하는 가구 ③ 대가축 1마리, 중소가축 3마리, 소가축 및 가금 40마리, 꿀벌 5군 이상 사육하는 가구 ④ 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 준농가: 개인농가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농업을 경영하는 기관, 단체(학교, 정부기관, 종교단체, 기타) - 농업종사인구: 만 15세 이상으로 겸업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에 종사한 사람 	<p>○ 정부 수립 당시부터 주로 농지(논, 밭, 과수원)의 소유관계를 제한하고 정책대상을 구분할 목적으로 농업 경영 주체를 농가로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개혁법: 농지보존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등에(1949년)서 농지소유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농지법상의 농가는 경종농업에 한정함으로써 축산농가 등 배제 - 농어촌발전촉진법: 농업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농업총조사(1990)의 농가를 농민으로 규정하고, 경영주체의 육성을 위하여 전업농가 개념을 도입. 개인에 대응하는 법인(영농조합)을 농민개념에 포함 시킴) - 농지법안 및 농어촌발전촉진법개정안: 농업의(검토중) 경영주체를 「농업인」으로 통일하고 육성목표로 전업농업인을 규정하고 있음. 농지법안에서는 농민을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농발법개정안에서는 기존 규정의 농민을 농업인으로 지칭

- 즉, 전통적인 가족노작적 자작농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개별농가의 보완적·대체적경영주체가 다양하게 성립되고, 이들은 이미 농업생산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점차 확대되는 경향에 있음.
- 그러나 현행의 농업통계에는 농가이외의 경영주체를 개념이 모

호한 '준농가'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산활동을 소홀히 하고, 농업통계의 대상을 스스로 축소하고 있다고 사료됨.

- 또한 개별경영의 발전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경영의 법인체(회사법인, 조합법인)가 다양하게 성립하여 농정에서의 위상도 높아지는 현실에 있으나 관련 통계에서는 그 위상정립이나 개념 규정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음.

표 4-2 영농 주체의 통계적 파악 실태와 관련 법률

종류	구 성	내 용	관 련 법 률	사업체수
농 가	전 업 농 가	농사이외 연간 노동일 수 30일 이하	농지개혁법	1,052천호
	겸 업 농 가	농사이외 연간 노동일 수 30일 이상	농지보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715천호
준 농 가	학 교	학교농장, 실습포 등 시험연구용	농지보전법	521개소
	정 부 기 관	농업시험장 등 정부기관의 사용목적		282
	종 교 단 체	사찰 등의 식량 자급을 위한 목적		274
	기 업 체	정관에 의한 농업경영 목적		231
	기 타	임의조직이나 집단의 농업경영		160
법인 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법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65개소
	위탁영농회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회사		483
기타 조직	기계화영농단체 작 목 반 협 동 출 하 반	농업기계공동이용조직 공동생산 및 출하조직 공동출하조직		39,183개소 15,917 12,425

주: 설립일자는 설립 등기일 기준.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현황 자료.

표 4-3 위탁영농회사의 연도별 설립 추이(1994. 7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누 계
합명회사	1	10	35	91	115	258
합자회사	2	1	41	75	87	209
유한회사	1	7	37	77	89	211
주식회사	1	7	31	48	24	111
합 계	5	25	144	291	315	780

주: 설립일자는 설립 등기일 기준.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현황 자료.

표 4-4 영농조합법인 연도별 설립 현황

구 분	1990	1991	1992	1993	1994	누 계
쌀	1	10	33	45	39	128
채 소	0	1	3	14	29	47
과 수	0	0	3	14	37	54
화 훼	0	0	2	2	15	19
특 작	0	0	2	5	33	40
축 산	0	2	4	71	55	132
복 합	1	15	13	50	80	159
합 계	2	28	60	201	288	579

주: 설립일자는 설립 등기일 기준.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구조정책국 현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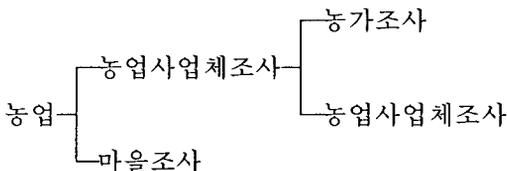
- 따라서 지금까지의 농가통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영농주체에 대한 개념정의 및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즉, 영농주체(농가, 생산조직, 법인경영, 관련 단체 등)의 개념 및 성격 규정을 기초로 센서스에서 추가되어 할 항목과 지표가 설정되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 현재 전체 준농가가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선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에 비하여 위탁영농회사나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통계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의 정책에 비추어서도 새로운 영농체의 농업생산 비중은 더욱 크질 것으로 전망됨.

- 이를 위하여 현재의 농가통계를 농업경영체통계로 재편하고 기존의 가구단위로서의 개인경영, 농가의 협업경영 및 법인사업체를 포괄하는 공동(집단)경영, 공동(집단)경영에 속하며, 자신의 농업을 영위하지않는 농가는 더 이상 개인경영(농가)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이를 제외한 기관 및 단체는 그대로 기관 및 단체로서 파악하여 전체적으로는 '준농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외국의 농업센서스의 조사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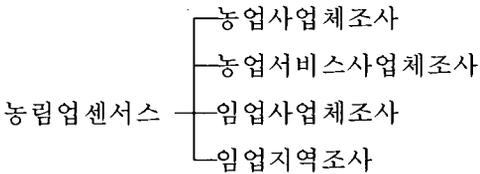
- 농업센서스의 조사대상은 일국의 농업구조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를 파악하는 데서 찾아져야 할 것임. 미국의 경우 농업센서스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는 농장(farm)이며, 이는 또한 장소(place)개념에 바탕을 둔 사업체(establishment)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음.
- 독일은 기술적 측면과 경영적 측면의 통일체개념으로서의 경영(betrieb)을 독일 농업구조의 기본단위로서 파악하고, 독일 농업센서스의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음.
- 새로운 경영체의 농업센서스에의 수용은 우리 농업의 구조를 보다 유용하게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세계 공통의 농림업센서스의 분류에도 상응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세계 농림업센서스의 조사대상



1.3. 일본의 농림센서스의 조사대상

- 일본은 우리와 거의 같은 가족노작적 농업개념의 농가, 마을을 농업구조의 기본구성단위로 상정하고 있으며, 세대상속을 목적으로 전제한 가족 또는 세대로서의 농가를 농업구조의 기본적인 구성단위로서 파악하고 있음. 농업센서스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가족농업으로서의 농가와 농가 이외의 농업사업체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음.

- 일본의 농림업센서스의 조사대상



- 여기서 농가 이외의 농업사업체란 협업경영체, 주식회사, 유한회사, 기타의 회사, 농협, 그외 농업단체로서 법인격을 소유한 사업체를 의미함.
- 농업서비스사업체는 농작업을 위탁받아 작업을 행하는 사무소 (농업사업체는 제외되며, 육묘의 생산·판매전문회사는 포함됨) 및 농업생산조직, 지방공공단체, 공사, 개인업자에서 농업사업체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사업체로 정의하고 있음.

1.4. 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규모 분류지표의 조정

1.4.1. 농업경영체의 판매수입별 분류체계의 도입

표 4-5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의 변화

연 대	내 용
1910년대	경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포괄하였으며, 경종, 목축, 가금, 양잠 등을 농업으로 간주(경작자가 아닌 농지 소유자를 포괄함으로써 농가가 과다 조사됨)
1930년대	“생업으로서 농업을 영위하는 가구,” 즉 농업경영, 판매농가의 개념이 조사대상으로 규정(상대적으로 경종농가에 치우친 조사)
1960년대	경지에 대하여 소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의 경작자를 조사함 (결과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가, 무경지 농가를 조사대상에서 배제했을 가능성이 존재)
1970년대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원”을 대상으로 하여 농업노동력단위개념이 도입됨(세대원의 주업, 부업 여하에 상관없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를 포괄함으로써 과다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1980년대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농업수입이 있는 가구”의 개념을 채택 (농업수입이 잘 포착되지 않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과소조사의 가능성이 존재)

자료: 김정호, “농가통계의 의의와 한계,” 『농촌경제』, 제17권 제2호, 56p에서 정리.

- 위 표에서 보다시피 그 동안의 농가의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이 시기별로 변화되어 왔으며, 이는 농업의 여건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나 이로 인한 통계의 시계열적 일관성의 부재로 인해 이용주체에 있어서는 그 정보적 가치가 의심되는 면이 발생하고 있음.
-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조사대상과 방법을 대비하여 볼 때 1980년대 이후의 농업여건이 농업 취업자의 절대적 감소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단순한 농업노동력으로서 농가의 조사대상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현재의 노동력구조로 보아서는 향후 수년

내에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농가가 상당수 존재할 것임으로 노동력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보다는 현재의 조사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의 농업상업화의 정도나 향후 농업의 시장 지향성으로 보아서는 농업수입의 포착이 어려운 농가는 생산단위로서의 농가, 정책대상으로서의 농가로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농업수입이 있는 가구개념은 자급적 농가와 판매농가를 포괄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농가파악 기준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이미 농업의 상업화, 시장 지향적 농업을 넘어 규모의 농업·기업적 농업을 지향하는 상황에 있고, 이러한 규모와 기업의 성과기준으로서 막연한 농업수입의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판매수입규모별 농가 분류가 요청되고 있음.
- 판매수입에 의한 농가 분류는 이미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채용하는 농가 분류의 한 기준이며, 이미 상업화와 시장 지향적 농업이 정착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판매수입규모별 농가 분류를 도입할 시점에 있다고 보여 짐.
- 현재는 작목별 수확면적을 기준으로 영농형태를 파악하는 정도이며, 농업경영의 성과에 대한 파악으로서는 불충분함. 따라서 농업경영체의 영농유형을 기간작목별 판매액 기준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즉, 농가의 분류를 경지규모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경영부문간의 소득률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고, 농업소득 형성력을 나타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영규모의 총체적 지표로서는 불충분함. 따라서 상품 생산농가의 진전과 농산물시장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판매수입별 농가 분류가 필요함.

1.4.2. 3ha 이상 규모급간의 세분화

표 4-6 농가규모구조의 변화와 규모계층의 분류

연도	총농가	0.5ha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2.5ha	3.0ha이상
1951	2,184 (100)	933 (42.7)	782 (35.8)	246 (11.3)	127 (5.8)	93 (4.3)	3 (0.1)
1960	2,329 (100)	815 (35.0)	838 (36.0)	399 (17.1)	163 (7.0)	95 (4.1)	19 (0.8)
1965	2,507 (100)	901 (35.9)	794 (31.7)	415 (16.6)	228 (9.1)	140 (5.6)	29 (1.2)
1970	2,411 (100)	787 (32.6)	824 (34.2)	446 (18.5)	193 (8.0)	124 (5.1)	37 (1.5)
1975	2,285 (100)	691 (30.2)	828 (36.2)	441 (18.6)	187 (8.2)	112 (4.9)	36 (1.6)
1980	2,218 (100)	612 (28.8)	748 (35.2)	438 (20.6)	191 (9.0)	108 (5.1)	31 (1.5)
1985	1,880 (100)	534 (28.4)	686 (36.5)	390 (20.7)	160 (8.5)	87 (4.6)	23 (1.2)
1990	1,702 (100)	466 (27.4)	527 (31.0)	337 (19.8)	174 (10.2)	121 (7.1)	42 (2.5)

자료: 「농업총조사」, 「농림수산주요통계」,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각연도.

- 우리 농업총조사의 농가는 경지규모, 시설면적,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 가운데서도, 특히 경지규모별 농가의 분류는 경지 없는 농가를 포함하여 0.1ha에서 3.0ha 이상까지를 12 구간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 현재의 분류상한규모인 3.0ha 이상 농가의 비율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이들 소위 대농층으로 불리는 3.0ha 이상 농가는 농가수의 구성비상의 증가외에도 생산에서의 점하는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됨.
- 이러한 대농층의 증가는 1990년대의 소위 양극분화라는 구조 변화의 특징적 현상이 되고 있으며, 경영 및 경지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농정 방향에 비추어 주목되어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분류상한규모인 3.0ha는 UR에 대응한 정부의 경지규모 확대의 목표가 20ha선이라는 점에 비추어서도, 또한 대농층의 생산비구조의 파악을 통한 경쟁력 정도의 측정, 규모 확대의 구체적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는 학계, 농민들의 실질적인 정보 수요에 비추어서도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즉, 3.0ha이상의 급간을 세분화하여 대규모경영에 대한 통계, 경영정보를 보다 세분화하고 정책수립담당자, 학계, 대규모경영지향의 농업경영자에 실질적인 통계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1.5. 일본 농업센서스의 분류체계

1.5.1. 농가 분류

1.5.1.1. 경영경지, 판매규모, 농업투하노동일수별 분류

- 경영경지만으로는 경영규모의 총체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산물판매규모로서 보완하여 분류함(농산물판매금액규모별분류).

표 4-7 농산물판매금액규모별 분류

판 매 농 가	
예외규정판매농가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2.5ha	
2.5~3.0ha	
3.0~3.5ha	
3.5~4.0ha	
4.0~5.0ha	
5.0a 이상	
자 급 적 농 가	

표 4-8 판매규모별 분류

판 매 농 가	
판 매 없 음	
50~100만엔	
100~150만엔	
150~200만엔	
200~300만엔	
300~500만엔	
500~700만엔	
700~1,000만엔	
1,000~1,500만엔	
1,500~1,000만엔	
2,000~1,000만엔	
3,000만엔 이상	
자 급 적 농 가	

- 판매규모별 농가분류는 토지면적 의존도가 작은 시설원예, 중소가축 생산 등 시설형농업의 발전에 대하여 경영경지면적규모만으로는 경영규모지표로서는 불충분함. 따라서 상품 생산농업의 진전과 농산물시장 등의 횡단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판매금액규모별 농가 분류를 작성함.
- 농업경영규모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서 1990년 세계농림업센서스에 새로이 실시된 항목임. 농가세대원의 농업종사일수, 농작업청부, 농업고용 등 일체의 농업투하노동을 집계한 분류임.

표 4-9 농업투하노동일수별 분류

판 매 농 가	
49인일 미만	
50~99인일	
100~199인일	
200~299인일	
300~499인일	
500~699인일	
700~999인일	
1,000인일 이상	
자 급 적 농 가	

1.5.1.2. 전겸업별 분류

표 4-10 전·겸업별 분류 내용

판 매 농 가		
전 업 농 가		
생산년령인구가 있는 농가		
제 1 종 겸 업 농 가		
세 대 주 전 업 농 가		
세 대 주 겸업농가	농 업 주	주
	겸	업
기 타		
제 2 종 겸 업 농 가		
세 대 주 전 업 농 가		
세 대 주 겸업	겸 업 주	농 업 주
		항상적 근무
		외지 근무
		일고 임시직
		자영겸업
기 타		
자 급 적 농 가		

1.5.1.3. 농가유별 분류

- 농업소득 의존도와 농업노동력의 확보상태를 조합하여 농업의 담당자(전업농)로부터 겸업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가층을 4등급으로 분류하여 실시

표 4-11 농가유별 분류 내용

분 류		분 류 의 기 준
관 매 농 가	1 류 농 가	농가소득의 50% 이상이 농업소득으로서 65세 미만의 남자농업전속노동자가 있는 농가
	2 류 농 가	농가소득의 50% 이상이 농업소득으로서 65세 미만의 남자농업전속노동자, 또는 65세 미만의 농업보조자가 있는 농가
	3 류 농 가	농가소득 50% 미만의 농업소득으로서 65세 미만의 남자농업전속노동자, 또는 65세 미만의 농업보조자가 있는 농가
	4 류 농 가	1,2,3류에서 제외되는 농가
자 급 적 농 가		분류하지 않음

1.5.1.4. 농업경영조직별 분류

표 4-12 농업경영조직별 분류

관 매 농 가	단 일 경 영 농 가
	수 도 작
	맥 류 작
	잡곡, 감자류, 두류
	공 예 농 작 물
	시 설 원 예
	야 채 류
	과 수 류
	기 타 작 물
	낙 농
	육 용 우
	양 돈
	양 계
	기 타 축 산
	양 잠
복 합 경 영 농 가	
준 단 일 복 합 경 영 농 가	
관 매 없 는 농 가	
자 급 적 농 가	

1.5.1.5. 농업노동력보유상태별 분류

표 4-13 농업노동력보유상태별 분류

관: 매 농 가	
전업종사자 없는 농가	
보조자도 없는 농가	
여자보조자만 있는 농가	
남자보조자만 있는 농가	
전업종사자가 여자만 있는 농가	
남자보조자가 있는 농가	
남자보조자가 없는 농가	
전업종사자로 남자가 있는 농가	
65세 미만 남자종사자가 있는 농가	
60세 미만 남자종사자가 있는 농가	
남자전업종사자가 1인 있는 농가	
여자전업종사자가 있는 농가	
여자전업종사자가 없는 농가	
남자전업종사자가 2인 이상 있는 농가	
여자전업종사자가 있는 농가	
여자전업종사자가 없는 농가	
자: 급 적 농 업	

2. 농업생산의 변화와 농업생산통계의 개선 방향

- 1980년대 이후 농촌노동력 부족, 고령화를 특징으로 하는 농업구조의 변화와 신선식품, 육류 소비의 증가로 특징지워지는 식품소비구조의 변화, 농산물의 수입개방 등 농업을 둘러싼 제여건의 변화는 농업생산구조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가의 작부체계와 영농형태, 경영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통계항목으로서는 변화하는 농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고, 통계조사항목의 추가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UR 이후 우리 경종농업의 경쟁력, 성장 가능성에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채소, 과수, 화훼 등에 대하여 지역단위의 식부 면적과 조사작목의 세분화, 생산비 및 관련 경영통계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며, 채소 가운데서도 유리온실에 의한 시설채소, 시설원예부문의 경영활동을 통계항목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 통계조사항목의 추가 및 조정의 필요성은 경종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축산부문에서도 같은 상황에 있음. 예컨대 육류 소비의 증가에 따른 축산물 가격의 안정, 축산경영의 개선, 축산물수급정책 등에 필요한 축산물생산비조사가 현재에는 축협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그 객관성 및 신뢰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공식적인 정부통계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2.1. 농업생산통계의 통계 수요의 변화

2.1.1. 작물별 생산량의 변화에 부응한 통계조사작목의 조정 및 추가

2.1.1.1. 경제작물, 시설작물에 대한 통계조사항목의 조정 및 추가

표 4-14 작물별 생산면적 및 생산량 동향

단위: 천ha, 천m/t

구분	식 량 작 물										경 제 작 물						화훼및양잠	
	미 곡		맥 류		두 류		서 류		잡 곡		채 소		시설야채		과 수		화훼	양잠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생산	면적	면적
1965	1,228	3,501	933	1,657	362	200	213	1,045	215	120	151	1,576	-	-	43	310	-	50
1970	1,208	3,939	833	1,820	358	271	180	783	123	124	258	2,653	4	140	60	423	-	85
1975	1,218	4,665	761	1,806	324	349	146	738	73	92	250	4,767	7	137	74	543	1.1	91
1980	1,233	3,550	360	906	244	266	92	431	53	170	377	7,676	18	412	99	833	1.3	37
1985	1,237	5,626	242	584	196	275	65	359	40	147	366	7,763	29	680	109	1,464	2.2	20
1990	1,244	5,606	160	417	188	271	40	208	37	133	317	8,677	40	1,017	133	1,766	3.5	13
1991	1,208	5,384	127	340	155	224	38	200	34	88	347	8,609	48	1,306	138	1,729	3.9	11
1992	1,157	5,331	103	315	135	212	50	243	33	105	356	8,791	50	1,435	148	2,090	4.4	8
1993	1,136	4,750	117	321	145	201	41	212	27	90	378	10,152	60	1,756	155	1,920	-	6

자료: 농림수산통계연보, 농림수산주요통계.

- 위 작물별 생산면적 및 생산량동향자료를 보면 식량작물에 있어서 미곡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그 외 맥류, 두류, 서류, 잡곡은 상당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에 있음. 반면 경제작물과 화훼부문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식품 소비구조의 변화를 반영할뿐 아니라 농업생산이 소득작목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이 부문에 대한 중점적 지원도 작부체계를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사료되고 있음.
- 농림수산부의 기구에 있어서도 원예특작과, 채소과, 과수화훼과로서 구성되는 원예특작국의 신설은 농업생산에 있어서 시설원예, 시설채소의 비중증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농업통계에 있어서도 이 부문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생산이 요청되고 있음.
- 현재의 원예, 특작부문의 통계는 채소에 있어서는 과채류·엽채류·근채류 총 17개 작목의 노지·시설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조사되고 있으며 사과·배 등 9개의 과실 및 참깨·들깨를 포함한 6개의 특용작물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조사되고 있음.
- 그러나 작목별 재배농가수, 경지규모별 농가수, 노동력보유 현황, 작목별 생산비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농산물의 경영정보의 파악과 수급계획의 수립이 제약되는 현실에 있음.

2.1.1.2. 화훼부문의 통계적 정비

표 4-15 화훼의 생산과 소비

단위: 백만원, (%)

구 분	화 화 품 목 별 생 산 액							1인당 소비량(원)
	총생산	절 화	분 화	구근	화목	관상수	종 자	
1975	6,716	390(6.3)	277(4.5)	20	529	5,466	34	190
1980	21,351	3,469(16.3)	3,338(15.6)	192	1,788	12,471	19	531
1985	74,599	14,369(19.3)	14,726(19.7)	1,656	8,459	35,356	33	1,823
1990	239,348	59,224(24.7)	99,516(41.6)	4,641	19,487	55,779	701	5,646
1991	315,575.3	90,124(28.6)	127,220(40.3)	10,714	26,282	54,393	3,382	7,471
1992	98,929	148,286(37.2)	159,566(40.0)	9,354	23,805	57,732	186	9,415

자료: 농림수산통계연보, 농림수산주요통계.

- 원예작물 가운데서도 생산과 소비면에서, 특히 신장률이 큰 작목이 화훼부문이며, 향후 우리 농업의 전략수출종목으로서도 주목되고 있음. 국내 소비면에 있어서도 매년 팔목할만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화훼부문의 생산 및 경영에 대한 통계적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음.
- 화훼의 총생산에서 절화와 분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1990년 이후 급격한 신장률을 보여 1992년 현재 화훼의 전체 총생산에서 절화와 분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77.2%에 이르러 화훼부문 생산의 주력을 이루고 있음.
- 그러나 화훼부문에 대한 통계적 정비는 대단히 미비하여 화훼편람, 화훼산업현황이라는 행정통계 성격을 띤 자료가 발표되고 있으나 발행의 연속성이 없을뿐 아니라 공식통계화되지 않음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화훼관련공식통계는 경영적 측면에서는 전국단위 재배농가수와 재배면적이 통계화되고 있으며, 생산측면에서는 위의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절화, 분화, 구근 등 6개 품목으로 대부분되어 품종별의 생산규모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화훼의 생산은, 특히 기후적·지역적 요인에 크게 좌우되고, 따라서 우리 농업에 있어서도 생산품종은 극히 제한적임. 따라서 실질적인 주력 생산품종을 구체적으로 통계화하지 않고 대부분류만으로 표시할 경우 통계 이용자에서의 정보적 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예컨대 화훼의 절화부문은 수많은 종류의 꽃 품종을 포괄하는 대부분류이나 실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꽃의 종류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수출전략품종도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절화 가운데 국화, 백합, 장미, 카네이션, 글라디올로스 등 주요 생산품목에 한해서는 세분류된 재배농가수와 재배면적, 재배면적에 있어서도 노지·시설재배를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1.2. 통계의 일관성 유지

- 현재까지의 농가구, 농촌인구 등에 대한 농수산통계연보와 센서스의 통계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통계연보의 통계치는 표본조사에 의한 것인 반면, 센서스의 통계치는 전수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본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센서스의 조사항목은 군단위표본에 의한 통계치를 확보함으로써 전수조사와의 표본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통계도 동시에 확보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2. 일본의 농업생산통계

- 일본의 생산통계는 농림어업생산의 기초가 되는 경지 및 식부면적, 가축 사육두수, 산림 및 조림, 벌채면적, 어업의 조업 현황 등의 실태와 농림수산물의 생산량을 파악하여 농림수산물의 수급대책, 농림어업의 진흥대책외에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한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음.
- 생산통계의 내용

- | | | |
|-----------|---|-------------------------------------|
| ① 작물생산통계 | { | 면적통계조사(경지, 식부면적)
생산량통계조사
피해조사 |
| ② 원예통계조사 | { | 면적통계조사
생산량통계조사 |
| ③ 축산물통계조사 | { | 축산기본조사
축산물생산량예찰조사
축산물생산량조사 |
| ④ 양잠통계조사 | { | 예상수확량조사
수확량조사
피해조사 |

3. 농가경제통계의 정비와 생산비통계의 확대

3.1. 생산비통계의 확대

- 현행의 생산비조사는 쌀, 쌀보리, 겉보리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성장품목의 경쟁력과 경영조건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을 모색하려는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임.
- 따라서 통계수요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최소한 국화를 비롯한 6대 절화류의 생산비조사를 포함하는 화훼와 채소에 대한 생산비조사가 필요함.
- 오이, 토마토, 딸기, 가지, 배추, 양파, 무, 고추, 마늘, 시금치 등 우리 농업과 야채재배농가에서의 소득 비중이 높은 작물에 대한 생산비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오이외 18개 품목에 대한 야채생산비조사가 이루어 지고 있음.
- 이러한 생산비조사는 단지 비목별 비용의 합계라는 생산비의 추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노동시간과 면적단위당 수확량, 출하가격까지 파악되는 입체적인 생산비 파악이 되어야 할 것임.

3.2. 축산물생산비조사의 정부통계화

- 현행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축협에서 7개 축종규모별로 표본조사로서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전국 81개지구에서 810표본조사 가구를 선정하여 조사구별로 담당직원 1명이 배치되어 일제부 자체기장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축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생산비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 기됨에 따라 이를 정부의 공식통계화하는 과제에 집중되고 있음.
- 농업에 있어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와 육류 소비의 증가에 따른 축산물가격의 안정, 축산경영의 개선, 축산물수급정책

등에 필요한 축산물생산비조사를 공식적인 정부통계화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농림업부가가치의 동향을 보면 1985년 이래로 농림어업과 농업의 부가가치생산은 대체로 정체되고 있음. 농업 가운데서도 재배업은 1970년 이래 완만한 감소 추세에, 축산업은 1985년 이래 상당 폭이 증가, 부대서비스부문은 정체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이 농업부문 전반이 쇠퇴·감소의 경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부문은 여전히 성장산업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축산업이 우리 농업 및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에 따라 농정에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표 4-16 농림업부가가치의 동향(불변가격)

단위: 10억원, (%)

구 분	농림어업	농 업			
		총 액	재 배 업	축 산 업	부대서비스
1970	6,943.2	5,875.5(100.0)	5,398.9(91.9)	380.0(6.5)	96.6(1.7)
1975	8,697.1	7,373.0(100.0)	6,681.6(90.6)	577.4(7.8)	114.0(1.5)
1980	7,656.8	6,261.7(100.0)	5,569.1(88.9)	581.8(9.3)	110.8(1.8)
1985	15,425.4	13,057.6(100.0)	11,226.1(86.0)	1,652.3(12.7)	179.2(1.4)
1990	15,692.4	13,261.7(100.0)	11,700.9(88.2)	1,323.8(10.0)	237.0(1.8)
1991	16,660.5	13,441.9(100.0)	11,803.2(87.8)	1,393.5(10.4)	245.2(1.8)
1992	16,603.4	14,217.7(100.0)	12,461.6(87.6)	1,507.5(10.6)	248.6(1.7)
1993	16,210.7	13,761.8(100.0)	11,850.1(86.1)	1,663.6(12.1)	248.0(1.8)

자료: 농림수산주요통계.

표 4-17 축산물 소비 추세에 대한 전망

단위: 천톤

	1992	1995	1998	2001
소고기 소비 전망	226.9	239.2	272.6	286.2
돼지고기 소비 전망	585.0	645.6	794.8	949.0
닭고기 소비 전망	231.5	232.5	271.5	318.6

자료: 유철호외, 「개방화시대의 축산업전망과 발전방향」, 1994.

- 향후 주요 축산물 소비 추세는 소고기 소비의 경우 1995년보다 23.8%가 늘어난 286.2천톤에 이를 전망이며, 돼지고기·닭고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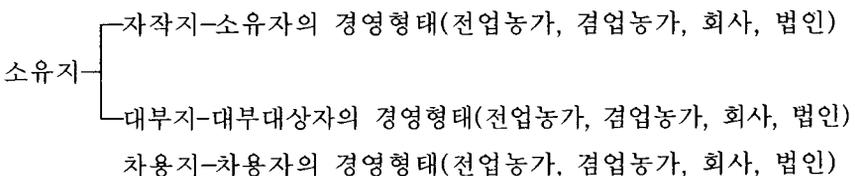
1995년에 비해 각각 47%, 37%가 증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축산물의 급격한 소비 증가로 인해 축산물의·수급 및 가격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이며, UR 이후 축산물의 수입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정책이 요청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농업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는 축산정책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축산물 생산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축산물 생산비의 공식통계화가 필요한 시점임.
- 통계수요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농산물의 유통경로 파악과 지역별·산지별 물동량과 가격조사, 유통경비의 조사, 청과물의 집·출하, 도매시장의 물동량의 파악을 위해서는 유통통계조사체계를 완전히 재편성할 필요가 있음.

3.3. 농지 이동에 관한 전문통계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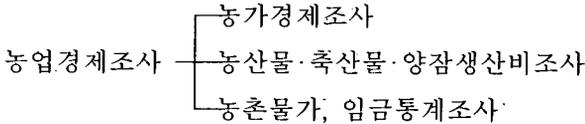
- 현재 농지의 임대차와 소유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정보는 농가경제통계의 토지소유상한에서 다루어 지고 있으며, 자작지·대부지·차용지의 규모가 정태적·양적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러나 향후의 농업구조정책의 목표 설정과 농지 유동화의 제조건, 농업경영체의 육성조건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통계적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농지의 이동이 보다 실질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으며, 소유지에 있어서는 소유농가의 경영형태(농가, 회사, 법인)가 대부지·차용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농가, 회사, 법인)이 동시에 파악되어야 함.

○ 농지통계의 구성



3.4. 일본의 농가경제통계와 생산비통계

○ 일본의 농가경제조사



○ 일본의 생산비조사품목

- ① 쌀 및 맥류의 생산비
- ② 야채 생산비
- ③ 과실 생산비
- ④ 공예농작물 생산비
- ⑤ 잡사 생산비
- ⑥ 축산물 생산비

4. 농업유통정보체계의 확립과 농업유통통계의 재편

4.1. 농업유통의 변화 전망

- 정부는 앞으로 전개될 UR 이후 WTO체제에 대응하면서 유통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안법의 개정 등 농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종합적 중장기대책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유통상의 문제점으로는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유통마진이 높아 농가 수취가격이 낮다는 점; 산지의 품목별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생산·출하조절기능이 미약하다는 점, 농수산물 공정거래와 신속대량유통을 위한 소비지대규모공영도매시장이 부족하다는 점; 도매시장을 보완하는 물류센터, 직거래 등 다양한 유통경로가 부족하여 농어민의 출하처의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유통의 제문제점을 극복하는 정부의 유통정책은 품목별 전문생산자조직의 육성을 통하여 산지에서의 선별, 포장, 저장, 공동출하를 위한 유통시설을 확대하고 산지가공공장의 설치,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것임.
- 또한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다원화하여 유통비용의 절감 및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한다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집약하여 보면 산지유통의 개혁, 공영도매시장의 개혁, 소비자유통경로의 다원화를 통하여 개방체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유통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에 있어서는 주산지의 형성이 활성화되고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활성화될 전망이나 풍흉에 의한 과잉·과소생산으로 인한 가격불안요인도 점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생산자가 필요한 유통 및 관측정보의 부족으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생산 및 출하조절능력이 극히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생산자조직이 산지에서 선별포장, 규격포장, 저장, 가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시설의 투자를 확대할 때에 있어서도 정책의 성과, 시설경영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통계화하고 유통정보화하는 정책적 노력도 아울러 요청되고 있음.
- 도매시장의 개혁에는 지정도매법인을 육성하고 경락가격과 낙찰자를 즉시 현장의 이동모니터에 입력하는 등 경매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또한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가격, 출하량에 대한 지속적인 통계화·정보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기대되기 어려운 과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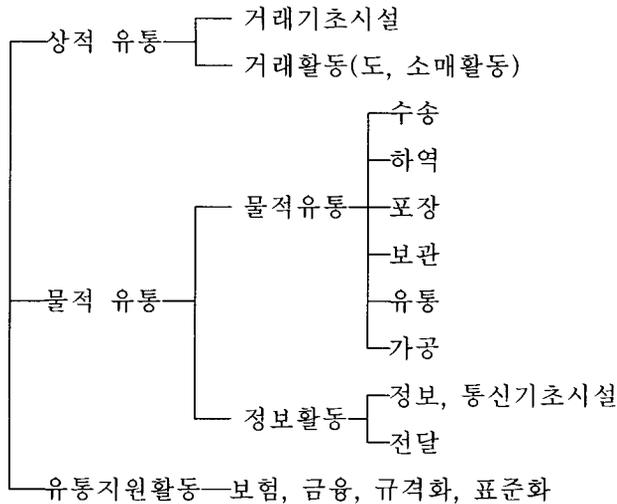
4.2. 유통정보망의 구축과 유통통계의 개선

4.2.1. 유통의 일반적 기능과 활동

- 일반적으로 유통이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하고 상품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매·소매의 상적 유통과 운송·보관·하역 등의 물적 유통 및 이와 관련된 정보와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함. 주요 기능으로서는 형태적 효용성, 시간적 효용성, 장소적 효용성 및 소유의 효용성 등이 있으며, 보조적 기능으로서는 정보 기능 및 금융기능 등이 있음.

- 이와 같은 유통의 제반 활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함.



- 정부에서는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연구센터 등을 유통정보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각 전담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의 저장, 분석, 가공, 분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한편 농수산통계관실을 농수산통계정보국으로 개편하고 농업관측협의회를 농업관측위원회로 개편하여 농업관측기능의 수행과 유통업무에 관련한 각 기관의 업무 조정,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을 심의, 정부의 가격안정정책에 대한 조언을 행하도록 하는 정책안을 제시하고 있음.
- 현행 유통경제통계의 내용은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농

벼, 맥류, 고추, 마늘, 양파)를 비롯하여 18개 농산품목재배의향조사, 그리고 농산물유통정보조사는 농·수·축협 및 농어촌진흥공사에 의해 분산조사되고 있으며, 식량작물 10품목, 채소 21품목, 특용작물 3품목, 화훼 8품목, 과일 10품목, 축산물 12품목, 수산물 33품목에 대하여 산지, 소비지경락, 소비지도매, 소비지가격 조사가 행하여 지고 있음. 그외 양곡 및 주요 식품 소비량 및 재고량조사도 유통경제조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통통계 및 정보조사의 내용과 규모로서는 정부의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에 충분한 통계적 뒷받침을 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상황임.

4.2.2. 유통통계 개편의 과제

(1) 현행 유통통계의 문제점

- 유통경제통계는 위와 같은 유통의 제반활동을 기초하여 유통 경로별·유통주체별로 통계를 포착하는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나 현재의 농업통계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재의 유통경제통계는 농가경제통계로서 분류되어야 할 성격인 농가경제조사와 농산물생산비조사를 유통경제통계로서 취급하고 있으며 재배의향조사, 식량작물 10품목, 채소 21품목, 특용작물 3품목, 화훼 8품목, 과일 10품목, 축산물 12품목, 수산물 33품목에 대한 산지, 소비지 경락, 소비지도매, 소비지가격조사, 양곡 및 주요 식품 소비량, 재고량조사 등의 극히 초보적인 유통정보조사에 한정되어 있음. 또한 조사의 주체도 농·수·축협, 농어촌진흥공사에 분산되어 일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음.

(2) 유통구조에 관한 통계조사

- 먼저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의 구조 파악을 위한 산지, 유통기구, 유통경비 등 유통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통계조사가 이루어

어질 필요가 있음.

- 향후의 농업생산이 시장에서의 개별 상품간의 경쟁이 아닌 산지간 경쟁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이미 상당한 품목이 산지화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품목별 산지 구분에 대한 조사가 우선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산지가 구분되어 조사되면 상적 유통기구로서의 집·출하기구, 도매기구, 분배기구가 파악되는 가운데 각 기구의 주체별로 농산물의 유통량 및 유통경비 등 물적 유통의 전반적인 통계가 포착되어야 할 것임.

(3) 청과물 유통통계조사

표 4-18 작물별 생산면적 및 생산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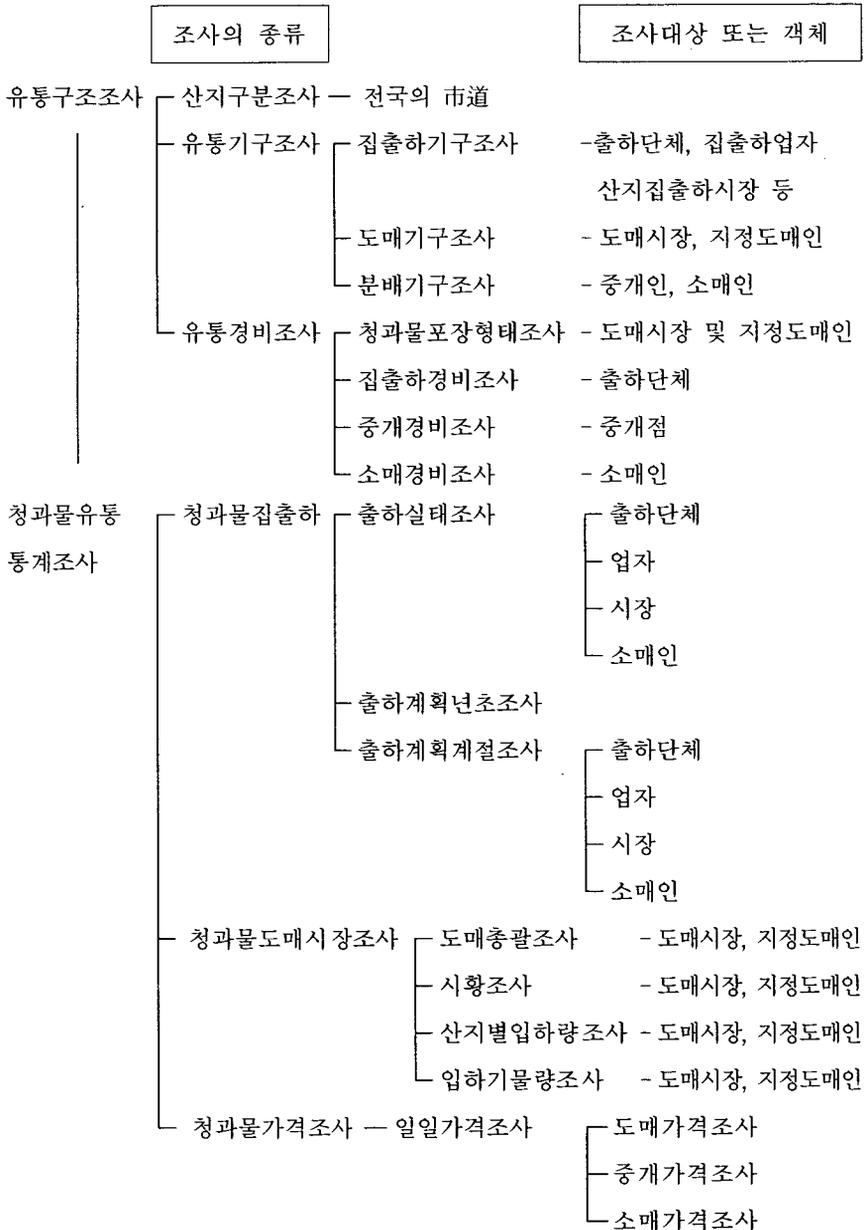
단위: 천ha, 천m/t

구분	식 량 작 물				경 제 작 물					
	미 곡		맥 류		채 소		시설야채		과 수	
	면 적	생 산	면 적	생 산	면 적	생 산	면 적	생 산	면 적	생 산
1965	1,228	3,501	933	1,657	151	1,576	-	-	43	310
1970	1,208	3,939	833	1,820	258	2,653	4	140	60	423
1975	1,218	4,665	761	1,806	250	4,767	7	137	74	543
1980	1,233	3,550	360	906	377	7,676	18	412	99	833
1985	1,237	5,626	242	584	366	7,763	29	680	109	1,464
1990	1,244	5,606	160	417	317	8,677	40	1,017	133	1,766
1991	1,208	5,384	127	340	347	8,609	48	1,306	138	1,729
1992	1,157	5,331	103	315	356	8,791	50	1,435	148	2,090
1993	1,136	4,750	117	321	378	10,152	60	1,756	155	1,920

자료: 농림수산주요통계.

- 우리 농업에서 경제작물로서의 청과물의 비중은 매년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과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음. 작물별 생산 동향에 있어서도 식량작물이 정체와 감소경향에 있는데 비해 채소, 과수 등의 청과물은 식부면적과 생산량에 있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음.
- 따라서 청과물의 집·출하기구와 도매시장을 통계파악의 거점으로 하여 산지별 입·출하, 시기별 물동량과 가격동향을 통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4.3. 농업유통통계 재편 방향의 개요



5. 지역통계의 정비 및 통계조사업무의 개선

5.1. 지역통계의 정비와 범위

- 지역통계업무는 지방의 농림수산행정의 기획과 수행에 필요한 통계를 작성함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농림수산어가의 경영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계조사에 대한 유대, 협조체제를 확보하는 데 기여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함께 지방의 농림수산행정 실시에 관계되는 지역농업 및 생산진흥 등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의 제반 농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음.
- 지역통계의 업무는 농림수산행정의 추진상 필요한 통계업무로서 그 범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① 지역의 기초통계의 작성 정비
 - ② 지방산업설계계획에 입각한 조사의 실시
 - ③ 지역농림수산업에 대한 통계 분석
 - ④ 농림어업 현지정보의 수집
 - ⑤ 지역통계의 발표 및 보급
 - ⑥ 관계기관과의 업무 연계 및 협조
 - ⑦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계사항에 대한 조사

5.2. 지역통계생산을 위한 표본설계의 조정

- <표 4-19>에서 보다시피 농업센서스를 제외하고는 현재 주요통계조사의 표본설계방법이 전부 전국단위의 표본설계에 의한 통계적 추정치를 공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전국단위의 표본설계는 군단위가 중심이 되는 지방화 시대의 통계수요에 대응할 수 없으며, 현재의 표본설계로서 군단위로 확대할 경우에는 표본오차가 매우 커짐에 따라 통계적 가치가 없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군단위의 지역통계생산을 위해서는 전체 표본설계를 전면 수정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표 4-19 통계별 표본설계방법

구 분	표 본 설 계 의 방 법	
농업센서스	1. 조사구는 일반조사구와 특별조사구로 구분, 설정함 2. 인구·주택센서스의 조사구를 기초로 하여 일반 조사구는 농가 120호 내외로 특별조사구는 농가 50호 내외로 1개 조사구로 설정함	
농업기본통계조사	1. 농가 및 농가인구	1975년 인구주택센서스 조사구를 기초로 하여 층화지표(농가수)에 따라 24개 층으로 층화하고 각 층의 조사구수 비례로 추출률 1/10으로 표본수를 확률비례 추출함
	2. 경지면적	지적도와 토지대장, 실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국의 경지를 약 2ha 크기로 인접한 경지끼리 단위구를 설정, 논 비율에 따라 추출률을 달리하여 36,460단위구를 표본으로 설정
농가경제조사	모집단을 전국의 농가(1980년 농업센서스 및 1980년 간이 농업센서스 이용)로 하고 각 도별로 전국 농가수를 조사구수로 나누어 조사구당 농가수의 크기를 결정, 310개 조사구에 약 1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 표본의 크기를 3,100호로 하였음(하나의 표본으로 농가경제조사, 농산물 생산비조사, 양곡소비량 조사, 농업관측조사 및 영농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설계)	
작물통계조사	식부면적조사	전국의 경지를 지번순으로 약 2ha 크기로 묶은 조사단위구 중에서 추출한 약 36,850개의 면적표본조사단위구를 대상으로 조사함
	생산량조사	면적조사단위구 중에서 조사대상작물이 과중되어 있는 단위구에 대하여 식부면적에 따라 지역별로 표본을 배분, 확률비례법, 혹은 계통추출법으로 소정의 표본조사단위구수를 추출하고 다시 표본조사단위구에서 논벼는 2개 필지, 보리·쌀보리는 1개 필지를 임의 계통추출함. 그리고 선정된 표본필지에서 임의계통추출법으로 각각 2개의 조사구를 추출하여 조사대상으로 함

5.3. 지역통계의 작성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연계

- 전국공통적으로 작성하는 조사항목으로서 주요 작목별 경지면적, 식부면적 및 수확량, 축산 사육두수 등을 작성하고 해당지역의 농가수, 농가인구 등의 기초통계의 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통계항목으로서는 관내의 지방특산물에 관한 통계와 기타 지역의 농림수산행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통계의 작성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행정담당자와 지방통계출장소와의 충분한 토의 및 업무연계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지방통계의 작성을 위해서는 지역별 관련기관으로 이루어진 협의회가 구성되고 통계정보의 작성·보급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정기적으로 협의, 검토를 함으로서 연계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행정의 담당과와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함으로서 농림수산행정의 합리적인 추진과 추진 방향의 설정에 지방통계출장소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5.4. 농업통계조사업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5.4.1. 농수산통계출장소의 직급체계상의 문제점의 개선

- 동일한 농림수산부 산하기관으로서 타기관과 비교할 때 직급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대외업무의 추진에 애로사항이 크고, 이로 인한 승진기회가 적음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실정이며, 통계관련공무원들의 전직·이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직급체계상의 문제는 통계인력의 노령화·여성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현지조사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비표본오차의 발생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통계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행의 직급체계는 통계출장소 소장의 경우 시군 산업과장과의 직급 차이는 물론이며, 농산물검사출장소와도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직급을 최소한 농산물검사출장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승진기회가 확대되고 통계관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 추진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표 4-20 농수산통계출장소 직급체계 비교

구 분	농수산통계출장소	농산물검사출장소
정 원	16명	9명
소 장	6급	5급
계 장	7급	6급

5.4.2. 농가조사 사례금의 상향 조정

- 현재 농수산통계조사에 있어서 업무 추진상의 애로사항과 비표본오차를 발생시키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농어민들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하여 통계조사에 대한 협조도가 크게 저하하는 경향을 지적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농어가의 협조가 크게 요구되는 일계부의 기장조사와 청취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경향은 농업의 규모화·상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영기법이 점차 고도화·비밀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사애로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농가조사는 관권 등에 의한 강제성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조사협조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되는 사례금의 액수가 물가 상승이나 현 농촌의 소비 수준에 비추어 너무 적어 조사원의 업무 추진과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에 커다란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
- 또한 축산물생산비조사가 축협에서 군 통계출장소로 이전될 경우 이러한 사례금 다과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축산농

가는 수도작농가에 비해 규모화·기업화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경영에 대한 완전한 공개는 세금 또는 기업비밀차원에서 꺼리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행 축산물생산비조사주체인 축협이 축산농가에 있어서 대출에 관련하는 이해당사자인 것과는 달리 행정기관인 통계출장소에서 일계부 기장을 기초로 하는 통계조사를 담당할 경우 조사협조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 현행 농가조사 사례금에 대한 현지 통계출장소의 경험적 인상안은 다음과 같음.

표 4-21 조사사례금 인상 조정안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농가경제조사	월 7,000원	월 30,000원
비농가양곡소비량조사	월 6,000원	월 20,000원
축산물생산비조사*	월 8,500원	월 40,000원

* 축산물생산비조사의 현행은 현재 축협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며, 개선안은 축산물생산비조사를 군 통계출장소에서 시행하였을 때의 사례금액 권고안임.

- 그밖에 일선 통계출장소의 조사업무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종합해 보면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하고 업무여건의 열악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보완과 유지비의 현실화를 호소하고 있음.

5.4.3. 통계조사 시설·장비의 확충

-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하고 업무여건의 열악 등이 통계조사업무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시설·장비의 보완과 유지비의 현실화가 요청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출장인원에 비해 2륜차대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출장업무의 상당량이 조사요원의 개인소유 승용차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음. 개인차량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예산에 의해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은 조사요원개인부담으로 귀속되어 업무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음.

- 2륜차의 부족에 더하여 이미 지급되고 있는 수리·유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개인소유차량의 조사업무 동원시에는 이에 대한 유류 소비량을 지원하는 예산상의 장치가 요청되고 있음.
- 난방비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행의 난방비 수준으로는 적정실내 온도의 유지가 곤란하여 업무 수행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음. 평택군통계출장소의 경우 5개월간의 연료비 총액이 620,310원으로 월 평균 124,062원, 일평균 4,962원의 예산 배정을 받고 있고, 난방대상은 4개 사무실(사무실, 소장실, 전산실, 당직실)에 석유대형난로(사무실용) 1대, 가스소형난로 2대, 석유보일러 1대를 구비하고 있었으나 석유대형난로 1일 소비량이 237원*20L=4,740원(전체 필요난방비 추정액 15,000원) 상당에 달해 사무실의 난방 외에는 실질적인 난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통계조사업무여건이 매우 열악하였음.

5.4.4. 전문성에 적합한 수당의 신설

- 통계업무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업무이고 노무적 성격이 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적차원에서 통계수당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전산담당직원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산담당직원은 전산담당직화하고 전산수당을 지급하며 출장소 관용차량 운전을 위한 운전수당의 신설 등 현장 통계조사요원들의 조사여건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은 상황에 있음.
- 인력의 수급면에서도 이러한 통계업무여건의 불리함이 이직·전직의 원인이 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통계직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나타나 통계요원의 노령화·여성화경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점증하는 통계수요에도 불구하고 통계인력의 질적 저하로 말미암아 원활한 통계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비표본오차의 발생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6. 농업통계 이용의 개선

6.1. 기존통계의 이용제약의 개선

- 현재 농가경제조사와 생산비조사에 대해서는 개인비밀의 보장이 라는 이유로 조사개표의 일반공개가 허용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이러한 제약으로 말미암아 특정사안에 대하여 파악하고자 할 때는 기존의 조사내용을 이용하지 못하고 2중조사의 비경제가 초래되어 왔던 것이 자금까지의 실정이었음.
- 그러나 통계수요조사에차도 나타났던 바와 같이 개인비밀을 보장하면서 통계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법, 즉 개인코드는 비밀로 하고 조사개표만을 공개한다던가 최소한 연구자와 학계에 한하여는 통계표본자료를 개방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음.
- 또한 현재의 통계청의 방법처럼 통계용역회사와에 의한 통계 이용의 활성화도 하나의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통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한하여 개인코드는 비밀로 하고 조사개표만을 공개하는 방법과 통계용역회사와에 의한 통계 이용의 유료화로서 이용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이 채택될 필요가 있음.

6.2. 통계이용의 PC통신화

- 퍼스널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으로 말미암아 천리안, 하이텔에 의

한 PC통신의 실용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미 일부의 통계자료가 PC통신으로 개인 이용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전산화됨과 동시에 디스켓, CD롬화, 천리안, 하이텔에 의한 PC통신화되어 이용의 일반화, 신속화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음.

- 따라서 농업통계의 모든 자료와 내용이 살아있는 정보체계로서의 기능을 기할수 있도록 디스켓, CD롬화, 천리안, 하이텔에 의한 PC통신화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통계에 접하고 통계자료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제 5 장

요약 및 결론

- 농업통계는 농업내외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센서스의 정비, 생산 및 유통통계의 정비, 지역통계의 정비 및 생산이 시급한 과제로 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초로 농업센서스, 생산통계, 농가경제통계, 농업유통통계 등 현재 농림수산부가 관장하는 농업통계에 한하여 그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음.

1. 농업정책여건의 변화와 농업통계 수요 변화의 전망

- 농업정책의 변화와 농업통계 수요 변화의 전망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 개선의 방향이 제시되었음.
 - (1) 전업농육성정책과 과수, 화훼, 특작에 관한 통계정비의 필요성
 - (2) 경영규모확대정책에 따른 농지규모분류지표의 확대
 - (3) 지역통계 확보에 의한 농림수산정보화와 농지전산화사업 전개

- 의 필요성
 (4) 유통관련통계의 전면적인 재정비

2.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부문별 농업통계 개선 방향

-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부문별 농업통계 개선 방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2.1. 농업센서스

- (1) 농업사업체조사의 개편
- (2) 조사작목 및 조사항목의 추가
- (3) 농가규모 분류의 개편
- (4) 조사주기의 단축

2.2. 농업생산통계

- (1) 조사작목 및 조사항목의 개편
- (2) 시설원예, 화훼 관련 통계의 강화

2.3. 농가경제통계

- (1) 조사작목 및 항목의 개편
- (2) 농지전용통계의 확보

2.4. 농업유통통계

- (1) 농업유통통계 조사체계의 전면적 개편

2.5. 지역통계

- (1) 지역통계 확보체계의 구축
- (2) 지역 기초통계의 확보

(3) 지방통계출장소 위상의 재정립

2.6. 통계의 이용

- (1) 지역통계자료 이용의 개방
- (2) 지역통계자료의 전산화, PC통신화

3. 농업센서스의 개선 방향

3.1.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통계적 수용

- 우리 나라 농업통계는 그 시발부터 세대단위 농가를 농업생산의 단위로 규정하고 그 총량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가 통계를 작성하여 왔음. 이러한 가족농의 전제는 농업노동력의 유출이나 상업농화의 진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퇴색되고 있음.
- 전통적인 가족노작적 자작농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개별농가의 보완적·대체적 경영주체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이들은 이미 농업 생산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점차 확대되는 경향에 있음.
- 따라서 현재 전체 준농가가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 할 때 현재의 농가통계를 농업 경영체통계로 재편하고 기존의 가구단위로서의 개인경영, 농가의 협업경영 및 법인사업체를 포괄하는 공동(집단)경영, 이를 제외한 기관 및 단체는 그대로 기관 및 단체로서 파악하여 전체적으로는 '준농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3.2. 농업경영체의 판매수입별 분류체계의 도입

- 판매수입에 의한 농가 분류는 이미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채용하는 농가 분류의 한 기준이며, 이미 상업화와 시장지향적

농업이 정착된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판매수입규모별 농가 분류를 도입할 시점에 있다고 보여짐.

- 현재는 작목별 수확면적을 기준으로 영농형태를 파악하는 정도이며, 농업경영의 성과에 대한 파악으로서는 불충분함. 따라서 농업경영체의 영농유형을 기간작목별 판매액 기준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즉, 농가의 분류를 경지규모에만 의존할 경우에는 경영부문간의 소득률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고 농업소득 형성력을 나타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영규모의 총체적 지표로서는 불충분함. 따라서 상품 생산농가의 진전과 농산물시장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판매수입별 농가 분류가 필요함.
- 판매규모별 농가 분류는 토지면적 의존도가 작은 시설원예, 중소가축 생산 등 시설형농업의 발전에 대하여 경영경지면적규모만으로는 경영규모지표로서는 불충분함. 따라서 상품 생산농업의 진전과 농산물시장 등의 횡단면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금액규모별 농가 분류를 작성함.
- 판매규모별 분류체계의 예(일본)

표 5-1 판매규모별 분류

판 매 농 가	
판 매 없 음	
50~100만엔	
100~150만엔	
150~200만엔	
200~300만엔	
300~500만엔	
500~700만엔	
700~1,000만엔	
1,000~1,500만엔	
1,500~2,000만엔	
2,000~3,000만엔	
3,000만엔 이상	
자 급 적 농 가	

3.3. 3ha 이상 규모급간의 세분화

- 우리 농업총조사의 농가는 경지규모, 시설면적, 가축두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 가운데서도, 특히 경지규모별 농가의 분류는 경지 없는 농가를 포함하여 0.1ha에서 3.0ha 이상까지를 12구간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음.
- 현재의 분류상한규모인 3.0ha 이상 농가의 비율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이들 소위 대농층으로 불리는 3.0ha 이상 농가는 농가수의 구성비상의 증가외에도 생산에서의 점하는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3.0ha 이상의 급간을 세분화하여 대규모경영에 대한 통계, 경영정보를 보다 세분화하고 정책수립담당자, 학계, 대규모경영지향의 농업경영자에 실질적인 통계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급간 세분화의 예

표 5-2 농산물판매액 규모

판 매 농 가	
	예외규정판매농가
	0.5ha 미만
	0.5~1.0ha
	1.0~1.5ha
	1.5~2.0ha
	2.0~2.5ha
	2.5~3.0ha
	3.0~3.5ha
	3.5~4.0ha
	4.0~5.0ha
	5.0ha 이상
자 급 적 농 가	

4. 농업생산통계의 정비 방향

4.1. 화훼부문의 통계적 정비

- 현재 작물별 생산면적 및 생산량동향자료를 보면 식량작물에 있어서 미곡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완만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그외 맥류, 두류, 서류, 잡곡은 상당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에 있음. 반면 경제작물과 화훼부문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현재의 원예, 특작부문의 통계는 채소에 있어서는 과채류·엽채류·근채류 총 17개 작목의 노지·시설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조사되고 있으며, 사과·배 등 9개의 과실 및 참깨·들깨를 포함한 6개의 특용작물의 식부면적과 생산량이 조사되고 있음.
- 그러나 작목별 재배농가수, 경지규모별 농가수, 노동력보유현황, 작목별 생산비 등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농산물의 경영정보의 파악과 수급계획의 수립이 제약되는 현실에 있음.
- 화훼부문에 대한 통계적 정비는 대단히 미비하여 화훼편람, 화훼산업현황이라는 행정통계성격을 띤 자료가 발표되고 있으나 발행의 연속성이 없을뿐 아니라 공식통계화되지 않음으로 해서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화훼관련공식통계는 경영적 측면에서는 전국단위 재배농가수와 재배면적이 통계화되고 있으며, 생산측면에서는 <표 4-15>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절화, 분화, 구근 등 6개 품목으로 대분류되어 품종별의 생산규모는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화훼의 절화부문은 수많은 종류의 꽃 품종을 포괄하는 대분류이나 실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꽃의 종류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수출전략품종도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절화 가운데 국화, 백합, 장미, 카네이션, 글라디올

로스 등 주요 생산품목에 한해서는 세분류된 재배농가수와 재배 면적, 재배면적에 있어서도 노지·시설재배를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2. 통계의 일관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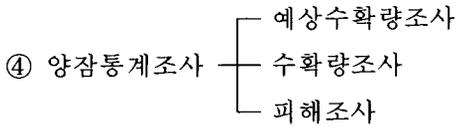
- 현재까지의 농가구, 농촌인구 등에 대한 농수산통계연보와 센서스의 통계치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통계연보의 통계치는 표본 조사에 의한 것인 반면, 센서스의 통계치는 전수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본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센서스의 조사항목은 군단위표본에 의한 통계치를 확보함으로써 전수조사와의 표본오차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통계도 동시에 확보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3. 일본 농업생산통계의 종류 및 내용

- 일본의 생산통계는 농림어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경지 및 식부 면적, 가축 사육두수, 산림 및 조림, 벌채면적, 어업의 조업 현황 등의 실태와 농림수산물의 생산량을 파악하여 농림수산물의 수급대책, 농림어업의 진흥대책외에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한다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음.

○ 생산통계의 내용

- | | | |
|-----------|---|-------------------------------------|
| ① 작물생산통계 | { | 면적통계조사(경지, 식부면적)
생산량통계조사
피해조사 |
| ② 원예통계조사 | { | 면적통계조사
생산량통계조사 |
| ③ 축산물통계조사 | { | 축산기본조사
축산물생산량예찰조사
축산물생산량조사 |



5. 농가경제통계의 정비

5.1. 농업생산비통계의 확대

- 현행의 생산비조사는 쌀, 쌀보리, 겉보리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성장품목의 경쟁력과 경영조건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정책 수립을 모색하려는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제한적임.
- 오이, 토마토, 딸기, 가지, 배추, 양파, 무, 고추, 마늘, 시금치 등 우리 농업과 야채재배농가에서의 소득 비중이 높은 작물에 대한 생산비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오이외 18개 품목에 대한 야채생산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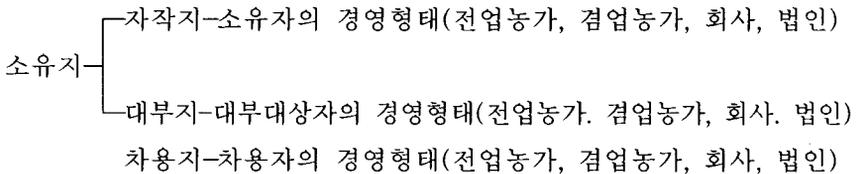
5.2. 축산물생산비조사의 정부통계화

- 현행 축산물생산비조사는 축협에서 7개 축종규모별로 표본조사로서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전국 81개지구에서 810표본조사가구를 선정하여 조사구별로 담당직원 1명이 배치되어 일부자계기장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축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생산비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정부의 공식통계화하는 과제에 집중되고 있음.
- 농업부문 전반이 쇠퇴·감소의 경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 부문은 여전히 성장산업의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축산업이 우리

농업 및 농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큼에 따라 농정에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5.3. 농지 이동에 관한 전문통계의 확보

- 현재 농지의 임대차와 소유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정보는 농가경제통계의 토지소유상한에서 다루어 지고 있으며, 자작지·대부지·차용지의 규모가 정태적·양적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러나 향후의 농업구조정책의 목표 설정과 농지 이동화의 제조건, 농업경영체의 육성조건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통계적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농지의 이동이 보다 실질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으며, 소유지에 있어서는 소유농가의 경영형태(농가, 회사, 법인)가 대부지·차용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농가, 회사, 법인)이 동시에 파악되어야 함.
- 농지통계의 구성의 예



5.4. 일본의 농가경제통계와 생산비통계의 내용

- 일본의 농가경제조사
 - 농가경제조사
 - 농업경제조사
 - 농산물·축산물·양잠생산비조사
 - 농촌물가, 임금통계조사
- 일본의 생산비조사품목
 - ① 쌀 및 맥류의 생산비
 - ② 야채 생산비
 - ③ 과실 생산비

- ④ 공예농작물 생산비
- ⑤ 잡사 생산비
- ⑥ 축산물 생산비

6. 농업유통통계의 재편 방향

6.1. 농업유통통계 재편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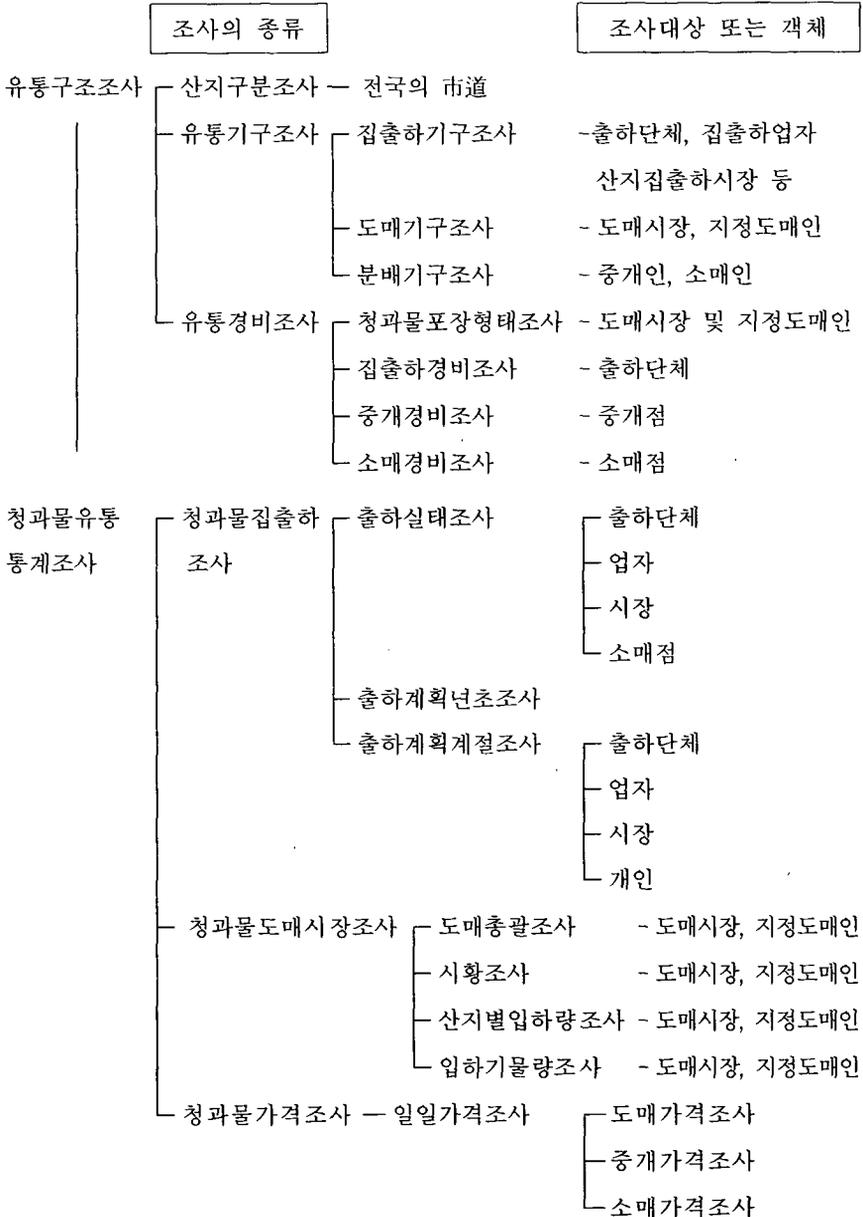
- 현행 유통경제통계의 내용은 농가경제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논벼, 맥류, 고추, 마늘, 양파)를 비롯하여 18개 농산품목재배의향조사, 그리고 농산물유통정보조사는 농·수·축협 및 농어촌진흥공사에 의해 분산조사되고 있으며 식량작물 10품목, 채소 21품목, 특용작물 3품목, 화훼 8품목, 과실 10품목, 축산물 12품목, 수산물 33품목에 대하여 산지, 소비지경락, 소비지도매, 소비지가격 조사가 행하여지고 있음. 그외 양곡 및 주요 식품 소비량 및 재고량조사도 유통경제조사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통통계 및 정보조사의 내용과 규모로서는 정부의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에 충분한 통계적 뒷받침을 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한 상황임.
- 농업유통통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의 구조 파악을 위한 산지, 유통기구, 유통경비 등 유통의 전반적 구조에 대한 통계조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 향후의 농업생산이 시장에서의 개별 상품간의 경쟁이 아닌 산지간 경쟁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며, 이때 상당한 품목이 산지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품목별 산지 구분에 대한 조사가 우선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산지가 구분되어 조사되면 상적 유통기구로서의 집·출하기구, 도매기구, 분배기구가 파악되는 가운데 각 기구의 주체별로 농산

물의 유통량 및 유통경비 등 물적 유통의 전반적인 통계가 포함
되어야 할 것임.

6.2. 청과물 유통통계조사의 시행

- 우리 농업에서 경제작물로서의 청과물의 비중은 매년 매우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과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음. 작물별 생산 동향에 있어서도 식량작물이 정체와
감소경향에 있는데 비해 채소·과수 등의 청과물은 식부면적과
생산량에 있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음.
- 따라서 청과물의 집·출하기구와 도매시장을 통계 파악의 거점
으로 하여 산지별 입·출하, 시기별 물동량과 가격동향을 통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함.

6.3. 농업유통통계재편방향의 개요



7. 지역통계의 정비 및 통계조사업무의 개선

7.1. 지역통계업무의 범위

- 지역통계의 업무는 농림수산행정의 추진상 필요한 통계업무로서 그 범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① 지역의 기초통계의 작성 정비
 - ② 지방산업설계계획에 입각한 조사의 실시
 - ③ 지역농림수산업에 대한 통계 분석
 - ④ 농림어업 현지정보의 수집
 - ⑤ 지역통계의 발표 및 보급
 - ⑥ 관계기관과의 업무 연계 및 협조
 - ⑦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통계사항에 대한 조사

7.2. 지역통계 생산을 위한 표본설계의 조정

- 통계별 표본설계방법에서 보다시피 농업센서스를 제외하고는 현재 주요 통계조사의 표본설계방법이 전부 전국단위의 표본설계에 의한 통계적 추정치를 공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전국단위의 표본설계는 군단위가 중심이 되는 지방화 시대의 통계 수요에 대응할 수 없으며, 현재의 표본설계로서 군단위로 확대할 경우에는 표본오차가 매우 커짐에 따라 통계적 가치가 없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군단위의 지역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전체 표본설계를 전면 수정하여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7.3. 지역통계의 작성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연계

- 전국공통적으로 작성하는 조사항목으로서 주요 작목별 경지면적,

식부면적 및 수확량, 축산 사육두수 등이 작성되고 해당지역의 농가수, 농가인구 등의 기초통계의 조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통계항목으로서는 관내의 지방특산물에 관한 통계와 기타 지역의 농림수산행정의 실시에 관련되는 통계의 작성이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행정담당자와 지방통계출장소와의 충분한 토의 및 업무연계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지방통계의 작성을 위하여는 지역별 관련기관으로 이루어진 협의회가 구성되고, 통계정보의 작성·보급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정기적으로 협의·검토를 함으로서 연계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행정의 담당과와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함으로서 농림수산행정의 합리적인 추진과 추진 방향의 설정에 지방통계출장소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7.4. 농업통계조사업무의 개선

- 통계조사업무를 일선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수산통계출장소의 업무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의 제반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이를 대폭적으로 조정 개선할 필요가 있음. 농수산통계출장소의 현지업무 개선을 위한 제문제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었음.
 - ① 농수산통계출장소의 직급체계상의 문제점의 개선
 - ② 농가조사 사례금의 상향 조정
 - ③ 통계조사 시설·장비의 확충
 - ④ 전문성에 적합한 수당의 신설

8. 통계 이용의 개선

8.1. 통계의 공개적 이용

- 통계수요조사에서도 나타났던 바와 같이 개인비밀을 보장하면서 통계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법, 즉 개인코드는 비밀로 하고 조사개표만을 공개한다던가 최소한 연구자와 학계에 한하여는 통계 표본자료를 개방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음.
- 또한 현재의 통계청의 방법처럼 통계용역회사와에 의한 통계 이용의 활성화도 하나의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통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한하여 개인코드는 비밀로 하고 조사개표만을 공개하는 방법과 통계용역회사와에 의한 통계 이용의 유료화로서 이용 활성화를 꾀하는 방법이 채택될 필요가 있음.

8.2. 통계 이용의 PC통신화

- 퍼스널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으로 말미암아 천리안, 하이텔에 의한 PC통신의 실용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미 일부의 통계자료가 PC통신으로 개인 이용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전산화됨과 동시에 디스켓, CD롬화, 천리안, 하이텔의 의한 PC통신화되어 이용의 일반화·신속화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대하고 있음.
- 따라서 농업통계의 모든 자료와 내용이 살아있는 정보체계로서의 기능을 기할수 있도록 디스켓, CD롬화, 천리안, 하이텔에 의한 PC통신화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통계에 접하고 통계자료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빈

면

부록 일본의 농업통계의 내용과 체계

빈

면

부록 일본의 농업통계의 내용과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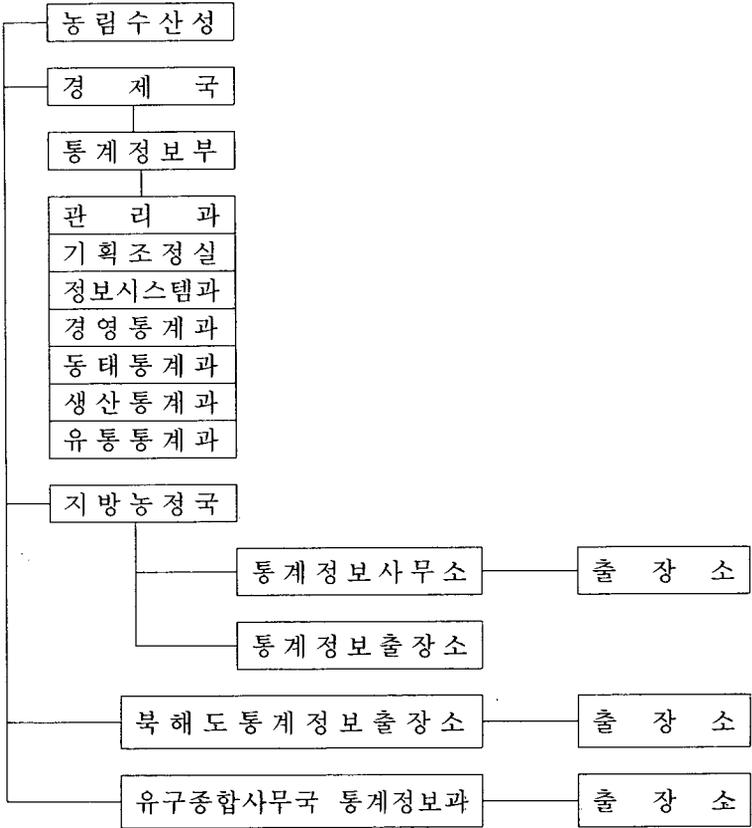
1. 일본 농업의 부문별 주요한 통계조사내용

부표 1 일본 농업의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내용

농업일반	농업생산자재	농산물의 생산	축산	농가경제	기타
(1) 농가	(1) 농업기계	(1) 식부면적		(1) 농가경제	(1) 농작물의
(2) 농가인구	(2) 비료·농약	(2) 재배양식		(2) 농축산물의	피해
(3) 농가취업동향	(3) 사료	(3) 농작업	(1)생산	생산비	(2) 농업기상
(4) 농업고용노동		(4) 작물의 생육	(2)유통		(3) 청과물의
(5) 농업집락, 농업생산조직		(5) 형질·수확			유통
(6) 경지		(6) 쌀			(4) 양잠
(7) 경영토지		(7) 수도			
(8) 농업기반		(8) 이모			
		(9) 두류			
		(10) 야채·과수			
		(11) 공예농작물			
		(12) 화훼			

2. 일본의 농업통계기구

2.1. 일본 농업통계기구도



지방농정국: 7개소

통계정보사무소: 38개소 통계정보사무소 출장소: 250개소

통계정보출장소: 44개소

북해도통계정보사무소: 4개소

유구종합사무국 통계정보과 출장소: 4개소

정원: 본성 418명 지방: 6,304명(북해도 544, 지방국 5,760)

합계: 6,722명

<p>공예농작물통계 농작물공제통계표 밭작물공제통계표 원예시설공제통계표 과수공제통계표</p>	<p>통계정보부(생산통계과) 경 제 국(보험관리과) 경 제 국(보험관리과) 경 제 국(보험관리과) 경 제 국(보험관리과)</p>
<p>③ 양장·제사 양잠통계 잠업에 관한 참고통계 양사업요람 잠사공제통계표</p>	<p>통계정보부(생산통계과) 농잠원예국(잠업과) 농잠원예국(제사과) 경 제 국(보험관리과)</p>
<p>④ 축 산 축산통계 우유유제품통계 가축공제통계 가축위생통계</p>	<p>통계정보부(생산통계과) 통계정보부(생산통계과) 경 제 국(보험관리과) 축 산 국(위생과)</p>
<p>⑤ 생산자재 과채중사생산통계조사보고 농약요람 사료편람</p>	<p>통계정보부(생산통계과) 농잠원예국(식물방역과) 축 산 국(유통사료과)</p>
<p>⑥ 농가경제·생산비 농가경제조사보고 농가형태별로 본 농가경제 농가경제조사농가생계비통계 농가경제조사농가자금동태통계</p>	<p>통계정보부(경영통계과) 통계정보부(경영통계과) 통계정보부(경영통계과) 통계정보부(경영통계과)</p>
<p>⑦ 농 지 농지의 이동과 전용 경지 및 작부면적통계</p>	<p>구조개선국농정부농정과 통계정보부(생산통계과)</p>
<p>⑧ 농축산물유통 청과물도매시장조사보고 청과물집출하기구조조사보고 계란, 食鳥유통통계 식육유통통계</p>	<p>통계정보부(유통통계과) 통계정보부(유통통계과) 통계정보부(유통통계과) 통계정보부(유통통계과)</p>
<p>⑨ 기 타 일본의 油脂事情 종합농협통계표</p>	<p>식품유통국(식품유지과) 경 제 국(농업협동조합과)</p>

2.3. 농업지역유형의 분류

제 1 차 분 류		제 2 차 분 류	
농업지역 유 형	기 준 지 표	제2차 유 형	기 준 지 표
도시적 지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에 접하는 인구집중지역면적이 5% 이상으로 인구밀도 500인 이상 또는 인구밀집지역 인구 2만명 이상의 시정촌 ○ 거주지에 접하는 택지율이 60% 이상으로 인구밀도 500인 이상의 시정촌 단 임야율 80% 이상의 지역은 제외 	수전형	수전율 70% 이상
		전답형	수전율 30~70%
		밭형	수전율 30% 미만
평지 농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율 20% 이상, 임야율 50% 미만의 시정촌. 단 경사 20분의 1 이상의 논과 경사 8도 이상의 밭의 합계면적의 비율이 90% 미만은 제외 ○ 경지율 20% 이상, 임야율 50% 이상으로 경사 20분의 1 이상의 논과 경사 8도 이상의 밭의 합계면적의 비율이 10% 미만의 시정촌 	수전형	수전율 70% 이상
		전답형	수전율 30~70%
		밭형	수전율 30% 미만
중간 농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지율이 20% 미만으로 도시적 지역 및 산간농업지역이외의 시정촌 ○ 경지율 20% 이상으로 도시적 지역 및 평지 농업지역이외의 시정촌 	수전형	수전율 70% 이상
		전답형	수전율 30~70%
		밭형	수전율 30% 미만
산간 농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율 80% 이상, 경지율 10% 미만의 시정촌 	수전형	수전율 70% 이상
		전답형	수전율 30~70%
		밭형	수전율 30% 미만

3. 일본의 농업통계목록(농림통계협회발간서)

- (1) 농림통계조사(월간)
- (2) 농림수산도서자료월보(월간)
- (3) 농림수산통계월보(월간)
- (4) 농림수산성홍보(월간)
- (5) 농업관측과 정보(월간)
- (6) 농림어업현지정보(월간)
- (7) 도설농업백서
- (8) 농업백서부속통계표
- (9) 농업관측의 개요
- (10) 농림수산성통계표
- (11) 포켓농림수산통계
- (12) 농림수산업생산지수
- (13) 농업, 식료관련산업의 경제계산
- (14) 식료수급표
- (15) 국제농림수산통계
- (16) 농림수산성영문통계적요
- (17) 농가경제조사보고
- (18) 농가형태별 농가경제
- (19) 농가자금동태통계
- (20) 농촌물가임금통계
- (21) 생산농업소득통계
- (22) 쌀 및 맥류의 생산비
- (23) 야채생산비
- (24) 과실생산비
- (25) 공예농작물 등의 생산비
- (26) 축산물생산비결과보고

- (27) 견생산비조사보고
- (28) 농축산업용고정자산평가표준
- (29) 농가구조동태조사보고서
- (30) 작물통계
- (31) 야채생산출하통계
- (32) 과수생산출하통계
- (33) 화훼생산출하통계
- (34) 축산통계
- (35) 우유·유제품통계
- (36) 시정촌별 수도·육도 생산량
- (37) 경지 및 작부면적통계
- (38) 농작물재해종류별피해통계
- (39) 축산물유통통계
- (40) 청과물도매시장조사보고
- (41) 청과물가공공장조사보고
- (42) 청과물집출하경비조사보고
- (43) 농수산물유통통계
- (44) 식량관리통계연보
- (45) 포켓비료요람
- (46) 유통사료편람
- (47) 가축위생통계
- (48) 종합농협통계표
- (49) 농지의 이동과 전용
- (50) 플라워 데이터 북(화훼)

참 고 문 헌

- 반성환외, 「농업통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0. 12.
- 김병호, 이장호, 「농가경제조사사업무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6.
- 박세권의 신영호, 「양곡 및 주요 식품 소비량조사사업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8. 8.
- 서종혁, 황의식, 「농업부문 거시계정 설정을 위한 기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7.
- 김정호, 이장호외, 「영농형태별 농가경제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10.
- 오치주, 이장호외, 「농가경제조사 표본설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9.
- 김정호, 이장호외, 「농가의 정의에 관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12.
- 정영일, “농가소득구조의 추이와 정책방향,” 「농업정책연구」, 제10권1호, 1983.
- 농림수산부, 「일본의 농수산통계정보」, 농수산통계관실, 1991. 9.
- 농림수산부, 「농수산통계조사현황」, 농수산통계관실, 1993. 7.
-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조사현황」,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9.
- 吉田忠외, 「農業統計の作成と利用」, 농산어촌문화협회, 1987. 9.
- 菊元富雄, 「農業經營研究のō方法と課題」, 明文書房, 1884.
- 鈴木富松, 「農業經營調査分析論」, 大明堂, 1960.
- 農林統計協會, 「地域統計分析の理論と實際」, 農林統計協會, 1979.
- 農林水産省, 「農業及び農家のō社會勘定」, 農林水産大臣官房 調査課, 1985.
- 農林水産省, 「農地及び農業構造家に關する統計資料」, 農林水産省 構造改善局, 1987.
- 農林統計協會, 「農林水産統計用語事典」, 農林統計協會, 1993.
- 及川章夫, 「日本農業統計調査史」, 農林統計協會, 1993.

정책연구보고 P10

농업의 여건 변화와 농업통계의 발전 방향

적은날 1995. 6. 펴낸날 1995. 6.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 5 - 10호 (1979. 5. 25)

적은곳 동양문화인쇄주식회사 · 737-210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